

# 경기도 지방문화재 신청자료

雪壑齋 鄭 矩

1350년(고려 충정왕 2)~1418년(조선 태종 18)

## 문화재 신청대상

1. 설학재(雪壑齋) 정구(鄭矩)墓域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산13-1(산단로 68번길 30-26)
2. 송산재(松山齋) 및 승정사(崇靖祀)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384-4(산단로 68번길 32)/ 510평

東萊鄭氏 雪壑齋公派 大宗會

## 참고자료 目次

1.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2.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3.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정종실록
4.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정종실록
5.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6.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7.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8.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9.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10.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11.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12.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13.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14.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15.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16.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17.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18.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19.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20.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21. 송정사 전경 사진과 향사드리는 사진
22. 설학재공파 대종회 계보도
23. 송산재 전경 사진
24. 송산사(의정부시 민락동 경기도 문화재)
25.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26. 송산 설학재 묘제 사진
27. 설학재 손자 정 종 공신임명 교지와 무과급제 홍패
28. 송산 설학재 묘역 전경 사진

雪壑齋 鄭 矩 1350년(고려 충정왕 2)~1418년(조선 태종 18)

본관은 동래(東萊). 시조(始祖) 정회문(鄭繪文)의 12世孫.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자는 중상(仲常), 호는 설학재(雪壑齋). 감찰대부(監察大夫) 양생(良生)의 아들이다.

1377년(우왕 3) 문과에 을과 2등으로 급제, 전교시부령(典校寺副令)을 지내고

1382년(우왕 8) 김극공(金克恭)의 옥사에 연루, 유배되었다.

설학재공은 고려조에서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를 지냈고 당시 이방원(태종)은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로 재직해 친분이 매우 두터웠다.

1392년(태조 1) 조선이 개국되자 설학재공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으로 고려의 신하로 절개를 지키며 조견(趙狷).원선(元宣) 두 분과 함께 양주 송산으로 거처를 옮겨 은둔하였다.

1394년(태조 3) 이방원(태종)의 끈질긴 설득으로 조선에 출사하여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지내고

1394년(태조 3) 왕명으로 한리(韓理).조서(曹庶).권홍(權弘) 변혼(卞渾)등과 함께 「법화경」 4부를 금니(金泥)로 썼다. 참고자료1)

1397년(태조 6)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참고자료2)

1398년(태조 7) 정안군(靖安君:태종)의 막료로서 판교서감사(判校書監事) 겸 상서원소윤(尙瑞院少尹)에 이어 승지(承旨)겸 상서원윤(尙書元尹)을 지냈다.

1400년(정종 2) 도승지(都承旨) 참고자료3) 대사헌(大司憲) 참고자료4)

1401년(태종 1) 예문관학사(藝文館學士) 참고자료5)

1406년(태종 6) 중군총제(中軍總制) 참고자료6)

1407년(태종 7)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참고자료7)

공조판서(工曹判書) 참고자료8) 호조판서(戶曹判書) 참고자료9)

1408년(태종 8) 예조판서(禮曹判書) 참고자료10) 판한성부사(判漢城府使) 참고자료11)

1412년(태종 12) 계림부윤(鷄林府尹) 참고자료12)

1414년(태종 14) 개성부윤(開城府尹) 참고자료13) 등을 역임하였다.

1416년(태종 16)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 참고자료14) 으로 임명되고,

1417년(태종 17)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건너가 홍무연간(洪武年間:

明太祖時代)에 만든 각궁(角弓)을 구입하여 왔으며, 참고자료15)

1417년(태종 17) 의정부 좌찬성(종1품.현 부총리급)으로 임명되었으나 참고자료16)

풍질로 사직하였다 참고자료17)

1418년(태종 18) 공의 나의 69세에 졸(卒) 하였다

태종은 이에 신하들과의 조회를 3일간 중단하고 중관(中官)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며 공의 죽음을 크게 애도하였고 정절(靖節)이라는 시호를 내리셨다. 참고자료18)

또한 설학재공의 흔적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은

1409년(태종 9)에 예서. 초서. 전서에 능하셔서 태종의 명으로 제액(題額)을 쓰신 태조대왕(이성계) 건원릉신도비(健元陵神道碑. 보물1803호)가 경기도 구리시에 있으며, 참고자료19) 벼슬을 사직하고 내려와 송산에서 쓰신 '송산유거'라는 한시가 전해지고 있다. 참고자료20)

이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설학재공의 후손들은 참고자료21) 1997년에 숭정사(崇靖祀)를 신축하여, 설학재공을 주벽으로 모시고 맏아들 효경(孝卿) 둘째아들 선경(善卿) 두 분을 종향으로 모시어 매년 음 3월15일 향사를 올리고 있다. 참고자료22)

그리고 뜻을 모아 공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송산재(松山齋)를 2002년 8월에 현 위치(의정부시 용현동)에 새로 중건(重建)하였다. 참고자료23)

설학재공은 여말 선초의 격변기에 조선의 개국(開國)에 참여하지 않고 고려의 신하로서 절개를 지키기 위해 지금의 의정부시 민락동에 조 견.원 선과 함께 칩거하였다. 그후 이 세 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정조 22년(1798년) '삼귀서사'를 짓고 조 견.원 선의 위패만 모셨고, 순조4년(1804)에 송산사로 이름을 고쳐 불렀다. 참고자료24)

비록 설학재공이 망조(望朝)가 된 고려에 대한 충성이라는 이상과 새로 개국된 조선에 참여라는 현실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 끝에 결단을 내리시어 조선왕조에 참여함으로써, 불사이군의 대의명분을 버리게 되어 송산사(松山祠)에 모셔지지 못했지만 정조대왕이 조 견.원 선 두분의 위패만 모시면서도 '삼귀서사'라고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아 조선개국에 참여한 공의 결단과 충정을 폄하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설학재공이 유언으로 “내가 죽어도 분토산(태종에게 하사받은 산/서울 중랑구 망우동 위치)에 장사지내지 말고 송산(의정부시 용현동 위치)에 묻으라“ 하셨다. 1418년 설학재공이 졸(卒)하자 태종은 그 죽음을 애도하여 아래와 같이 치제문(致祭文)을 하사하셨다.

松山一髮(송산일발) 首陽同屹(수양동홀)

멀리 송산을 보니 수양산같이 우뚝하구나

萬古日忠(만고일충) 伯夷豈一(백이기일)

만고의 충신이 어찌 백이 한사람뿐이겠는가

光風霽月(광풍제월) 鄭公襟懷(정공금회)

화창한 바람 비 개인 뒤의 맑은 달은

정공의 마음 속에 품은 생각일세

道德文章(도덕문장) 百世師表(백세사표)

도덕과 문장은 영원히 후세의 모범이 되다 참고자료25)

시호를 정절(靖節)로 내린 것으로 보아서도 설학재공은 개인의 부귀영달을 위해 조선 개국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시대상황을 포용하고 받아들이신 것이다.

설학재공은 아직 혼란스러웠던 조선초에 계림(경주). 개성. 한성(서울)의 부윤(지금의 시장)으로서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어 해결하였고,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해양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호조. 공조. 예조의 정2품 판서(지금의 장관)로 재직하여 중앙행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의정부좌찬성(현 부총리)까지 임명될 정도로 헌신하였다.

이렇게 국가에 충성하고 백성을 살피는 일에 평생 견마지로(犬馬支路)의 삶을 사셨던 공의 유지를 받들고 행하기 위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후손들이 음력 10월 1일 송산에 있는 공의 묘역에서 묘제(墓祭)를 올리고, 음력 3월 15일

송산재에서는 향사(享祀)를 드리면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데 참고자료26)

의정부시가 송산(의정부시 용현동 위치)유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설학재공의 묘역과 송산재를 천묘(遷墓).철거(撤去)해야 될 입장에 놓여 저희 후손들은 비탄함

을 금할 길이 없는 심정입니다.

이에 저희 후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중에 의정부시 민락동에 위치하고 있는 송산사(松山祠)가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보존되고 있고, 공의 손자인 정종(1414~1476)이 이시애난(李施愛亂)을 진압한 공으로 3등공신으로 임명한다는 세조의 교지(教旨)와 무과급제 홍패(武科及第 紅牌)가 보물로 지정되어 보존되어 있듯이, 참고자료27)

약 600년이 된 석등을 비롯한 유물이 있어 보존해야 할 설학재공의 송산묘역(松山墓域)과 참고자료28) 설학재공의 후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공의 조선 개국에 참여한 결단(決斷)과 20여 년간의 헌신을 가능하게 했던 애국사상(愛國思想)과 위민정신(爲民精神)의 유산을 전해줄 장소인 송산재(松山齋)를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어야 함이 마땅하기에 이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태조 6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7월 17일(갑인) 1번째기사  
왕씨들의 복을 빌기 위해 금으로 《법화경》을 쓰고 읽게 하다

임금이 왕씨(王氏)의 복을 빌기 위하여 전 예의 판서(禮儀判書) 한이(韓理)와 전 우윤(右尹) 정구(鄭矩), 봉상 경(奉常卿) 조서(曹庶), 전 헌납(獻納) 권홍(權弘), 전 사복 주부(司僕注簿) 변흔(卞渾) 등에게 명하여 금(金)으로 《법화경(法華經)》 4부(部)를 써서 각 절에 나누어 두고 때때로 읽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혼이 죄를 범하여 도망해 있었는데, 혼이 글씨를 잘 쓰므로 임금께서 같이 쓰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6장 B면

【영인본】 1책 66면

【분류】 \*사상-불교(佛敎) / \*예술-미술(美術)

迎接都監所錄一一痛懲 從之 ○甲寅 上以薦王氏 命  
 前禮儀判書韓理前右尹鄭矩奉常卿曹庶前獻納權弘前司  
 僕注簿卞渾等金書法華經四部分置各寺以時披讀先時渾  
 犯罪在逃 上以渾善書并 命之 ○令百官各品出鐵有差  
 納軍器監以造兵器 ○乙卯憲司劾問依托使臣作弊者開具  
 姓名罪狀以 聞 上曰尤甚者置極刑欲受官職者皆充水  
 軍黃永奇向國忠厚請亦不多其托永奇者勿並論 ○戶曹典  
 書李敏道請行錢幣 ○丙辰 上欲觀毋岳之地將以為都門  
 下府邸舍上書時尚炎靈動勞未便且農民亦未得暇待八月  
 既望亦未晚也 從之 ○戊午義興三軍府狀啓曰前朝之季  
 府兵大毀今當更始之初釐革舊弊舉行成法嚴宿衛備非常  
 尊 主威重國勢關係甚重各宜盡心遵守其中無識之徒受  
 衛領之職不思國家設官之義只以不便於已交口訛謗沮毀  
 成法其為不忠甚矣願自今有如前沮毀者令憲司啓 聞論  
 罪除名不叙其衛領掌務知情不告者與同罪 從之 ○都評

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5월 16일(임술) 3번째기사  
 백관과 기로들이 공부 등 3인을 경사로 보내는 문제를 의논하다

백관(百官)들과 기로(耆老)를 조정에 모아서 공부(孔俯) 등 3인을 경사(京師)로 가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의논하게 하니, 의논하는 사람이 경사로 가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이가 많았는데, 다만 서원군(西原君) 한상경(韓尙敬) 등 열 몇 사람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정구(鄭矩) 등은 아뢰었다.

“임금이 명령하면 신하가 봉사(奉仕)하는 것은 예절의 떳떳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세가 부득이한 일이 있게 되면 예절도 때에 따라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서(曹庶)와 곽해룡(郭海龍)의 문초장(問招狀)과 예부(禮部)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사(文辭)를 보건대, 그것이 기만(欺瞞)함이 심한 편입니다. 대개 천추절(千秋節)의 하례(賀禮)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한 것도 아니며, 주계(奏啓)의 글과 양식이 지난날 보다 다른 것도 아닌데, 상국(上國)의 노여움은 정축년부터 일어났으니, 그 기략(機略)을 베풀어 모계(謀計)를 운용(運用)함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조서와 공부 등 3인이 희모(戲侮)를 하지 않은 것은 다만 온 나라 신민(臣民)이 다 같이 알 뿐만 아니라, 천지의神明(神明)께서 실로 밝게 굽어보시는데, 상국(上國)에서 거짓을 꾸며서 그 공사(供辭)를 위협해 취하여 3인을 오라는 명령이 있으나, 이 3인에게 그친다면 이들을 보내는 것도 옳겠지마는, 또 3인의 공사(供辭)를 취하여 죄명을 꾸며서 만든다면 반드시 복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이 있을 것이니, 장차 어떻게 대응(對應)하겠습니까? 오늘 이 3인을 보내고 내일 또 10인을 보내어 국가가 마침내 편안하고 평온하게 된다면 진실로 마땅히 보내겠지마는, 지금 명백히 그 기만(欺瞞)을 알면서도 그 명령을 임시변통으로 우리의 의사를 굽혀 따라서 먼저 겁내고 약한 것을 보이게 된다면 후일의 누우침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우선 3인을 머물러 두고, 사정을 자세히 갖추어 빈다면 느끼어 깨달게 되는 이치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좌정승 조준 등과 이 일을 의논하였으나 망설이고 결정짓지 못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4장 B면

【영인본】 1책 123면

【분류】 \*외교-명(明)

李文和傳旨使司曰向者貶外都城監役官皆宥其罪金愨決  
 罪還任凡貶外貲人具罪狀輕重以聞使司聞 命乃復曰  
 殿下既恐懼修省時政得失民間利病宜加咨訪 上從之○  
 會百官耆老于朝議孔俯等三人赴京可否議者多以赴京為  
 言唯西原君韓尚敬等十數人以為不可左諫議大夫鄭矩等  
 言君令臣供禮之常也然勢有不得已則禮有時而變焉今見  
 曹庶海龍之招與夫禮部致意之辭其為諛甚矣蓋 千秋賀  
 禮非始於去年奏啓字樣不異於曩日而上國之怒發自丁丑  
 其設機運謀必有以也且曹庶與孔俯等三人不為戲侮非唯  
 一國臣民所共知也皇天后土實所明鑑上國羅織虛妄劫取  
 其辭而有三人發來之 命止此三人則遣之可也又取三人  
 之辭而羅織罪名則必有難從之命其將何以應之今日遣此  
 三人明日又遣十人而國家終安且平則固當遣之今乃明知  
 其諛而曲從其 命先示劫弱則恐貽後日之悔也願 殿下  
 且留三人具奏陳乞則庶有感悟之理 上與左政丞趙浚等議

● 인세보기

▼ 국역

정종 4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4월 6일(신축) 10번째기사  
 문하 시랑찬성사 하운에게 명하여 관제를 다시 정하다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 하운(河崙)에게 명하여 관제(官制)를 다시 정하게 하였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고쳐 의정부(議政府)로 하고, 중추원(中樞院)을 고쳐 삼군부(三軍府)로 하여, 직임이 삼군(三軍)을 맡은 자(者)는 삼군에만 전적으로 나가게 하고, 의정부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좌복야(左僕射)·우복야(右僕射)를 고쳐 좌사(左使)·우사(右使)로 하고, 다시 예문관(藝文館)의 태학사(太學士) 1원(員)·학사(學士) 2원(員)을 두고, 중추원 승지(中樞院承旨)를 고쳐 승정원 승지(承政院承旨)로 하고, 도평의사사 녹사(都評議使司錄事)를 고쳐 의정부 녹사(議政府錄事)로 하고, 중추원 당후(中樞院堂後)를 승정원 당후(承政院堂後)로 하였다. 조준(趙浚)으로 평양백(平壤伯)을 삼고, 이화(李和)로 영삼사사(領三司事) 판의정부사(判議政府事)를 삼고, 이거이(李居易)로 판문화부 의정부사(議政府事)를 삼고, 성석린(成石璘)으로 판의정부사(判議政府事)를 삼고, 민제(閔霽)로 판의정부사를 삼고, 성석린의 공신호를 고쳐 동덕 찬화(同德贊化)라 하고, 민제를 동덕 좌명(同德佐命)이라 하고, 아울러 녹군국중사(錄軍國重事)를 가(加)하고, 정탁(鄭擢)으로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태학사(太學士)를 삼고, 도총제(都摠制) 이하는 의정부사(議政府事)를 겸하지 못하게 하고, 정구(鄭矩)를 승정원(承政院) 도승지(都承旨)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대성(臺省)에서 다시 교장(交章)을 올려 말하였다.

“병권은 흠어서 통속이 없게 할 수 없고, 또한 치우쳐서 혼자 전장(專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흠어져서 통속이 없으면 그 위엄이 나누어지고, 치우쳐서 혼자 전장하면 그 권세가 옮겨지니, 위엄이 사람에게 나누어지거나 권세가 아래에 옮겨지면, 난(亂)을 일으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 등이 전일에 글장을 올려 사병(私兵)을 혁파해서 삼군부(三軍府)에 붙여 위엄이 나누어지는 폐단을 막기를 청하였는데, 곧 유윤(兪允)을 받았으므로 여러 사람이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군사를 한 부(府)에 돌린다면, 치우쳐서 맡게 하거나 권세가 옮겨지는 근심을 미리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 등이 삼가 상고하건대, 예전에 병법의 설치에는 명령을 발하고 군사를 발하고 군사를 맡는 차등이 있었습니다. 명령을 발하는 자는 재상이요, 군사를 발하는 자는 중간에 있는 총제(摠制)이요, 군사를 맡는 자는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자였습니다. 재상은 임금의 명령을 품(稟)한 것이 아니면 명령을 발하지 못하고, 총제는 재상의 명령이 있는 때가 아니면 군사를 발하지 못하고, 군사를 맡는 자는 총제의 명령이 있는 때가 아니면 행(行)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하(上下)가 서로 유지(維持)하여 체통이 문란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변을 꾸미고자 하더라도 능히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법이었습니다. 고려의 옛 제도는 당(唐)나라·송(宋)나라를 본받았는데, 성재(省宰)는 나라의 정치와 군국(軍國)의 일을 맡아서 통속하지 않은 바가 없었으므로 곧 명령을 발하는 자이요, 중추(中樞)는 군기(軍機)를 맡았으므로 곧 총제(摠制)하여 군사를 발하는 자이요, 여러 위(衛)의 상장군(上將軍)·대장군(大將軍) 이하는 부병(府兵)을 전장(專掌)하여 숙위(宿衛)를 맡아서, 변이 있을 때 작으면 낭중(郎中)·낭장(郎將)을 보내고, 크면 장군(將軍) 이상을 보내어 적(敵)에 대응케 해서 일찍이 패배한 적이 없었으니, 이것이 군사를 맡는 자입니다. 원(元)나라를 섬긴 이후로 국가에 일이 많아서 성재(省宰)와 중추(中樞)가 모여 일을 의논하였는데, 이것을 양부 합좌(兩府合坐)<sup>159)</sup>라 하였고, 인하여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두었습니다. 충렬왕(忠烈王) 이후에 부병(府兵)이 점점 무너져서, 비로소 재상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적에 대응하였으니, 옛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태조(太祖)께서 개국한 처음에 양부 합좌하는 것을 인습하여 고치지 않고서, 의흥 삼군부(義興三軍府)를 두어 군무(軍務)를 전장(專掌)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재상은 군정(軍政)을 듣지 못하고, 중추(中樞)는 군기(軍機)를 맡지 못하니, 옛 법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중추(中樞)의 벼슬이 실상 허직(虛職)이 되어, 인원은 많고 위계(位階)는 높아서 한갓 녹봉만 받을 뿐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중추(中樞)를 혁파하고 삼군부(三軍府)로 녹관(祿官)을 삼아서, 성재(省宰) 이상으로서 경직할 수 있는 자는 곧 절제(節制)를 경직하고, 녹관은 중추(中樞)의 예에 의하여 지삼군(知三軍)·동지 삼군(同知三軍)·청서(簽書)·학사(學士) 각각 1원(員)으로 하되, 모두 문관이나 혹은 무관 중에서 잘 모획(謀畫)하고 능하게 판단하는 자로 시켜서, 사사(使司)의 직함을 띠고 합좌(合坐)하여 군국(軍國)의 정사를 더불어 의논하게 할 것입니다. 무릇 군(軍)에 관한 일이 있으면 사사(使司)에서 임금의 명령을 품(稟)하여 받아서 삼군부(三軍府)에 옮겨, 재상이 명령을 발하는 법에 응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 절제사(節制使)는 성재(省宰)가 경직하는 것을 제외하고, 삼군(三軍)에 각각 1인을 녹관(祿官)으로 하여, 비록 중추(中樞)를 지내어 위치(位次)가 지(知)·동지(同知)의 위에 있더라도 다만 1군(軍)만 절제(節制)하게 하고, 삼군(三軍)을 통솔할 만한 정도는 아니오니, 사사(使司)의

직함을 띠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직접 본부(本府)에 앉아 서울과 외방의 군무(軍務)를 다스리게 하여, 총제(摠制)의 직책을 존중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 위(衛)의 상장군(上將軍)·대장군(大將軍)은 합하여 삼군부(三軍府)에 붙이어 그 일에 이바지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 절제사와 상장군·대장군 이하는 번(番)을 나누어 숙위(宿衛)하여 불우(不虞)의 변에 대비하고, 군사를 맡는 직임에 이바지하게 하되, 번이 있으면 절제(節制) 이하가 명령을 받아서 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통속이 있어서 위엄이 나뉘어지지 않고, 또한 혼자 전장(專掌)하기 어려워져서 권세가 옮겨지지 않으므로, 이름과 실상이 서로 부합하고, 체통(體統)이 존엄하여져서, 실로 자손 만대의 아름다운 법이 될 것입니다.”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대백산사고본】 1책 4권 5장 A면

【영인본】 1책 170면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인사(人事) / \*역사(歷史)

[註 159]양부 합좌(兩府合坐) : 고려 때 삼성(三省)의 문관(文官)과 중추원(中樞院)의 무관(武官)이 같이 모여 나라의 중대한 일을 의논하던 일. 후일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로 되었음.

▶ 닫기

三軍府以為公家之兵以立體統以重國柄以攝人心除兩殿宿衛外私門直宿一皆禁斷朝啓母令私伴持兵根隨以應古者家不藏兵之意以防後日交猜構亂之端國家幸甚疏上上與世子議之即令施行是日放諸節制使所領軍馬悉還其家李佇獵于平州未還三軍府遣人于佇使之速還居易父子與失兵權者皆怏怏日夜會聚多憤怨○命門下侍郎贊成事河崙更定官制改都評議使司為議政府改中樞院為三軍府職掌三軍者專仕三軍不得坐議政府改左右僕射為左右使復致藝文館大學士一員學士二員改中樞院承旨為承政院承旨改都評議使司錄事為議政府錄事中樞院堂後為承政院堂後以趙浚為平壤伯李和領三司事判議政府事李居易判門下府議政府事成石璘判議政府事閔霽判議政府事改石璘功臣號為同德贊化霽同德佐命並加錄軍國重事鄭擢藝文春秋館太學士都摠制以下不得兼議政府事鄭矩承政院都承旨先是臺省復上交章曰兵權不可散而無統亦不可

卷一百一十五 憲宗 十四年

● **인쇄보기**

▼ 국역

정종 5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9월 8일(기사) 2번째기사  
 성석린(成石璘)이 어머니가 늙었다고 사직하기를 비니 창녕백으로 봉하다

성석린(成石璘)이 어머니가 늙었다고 하여 갈사(乞辭)하기를 심히 간절하게 하니, 성석린으로 창녕백(昌寧伯)을 봉하고, 이거이(李居易)로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를, 민제(閔霽)로 좌정승(左政丞)을, 하윤(河崙)으로 우정승(右政丞)을, 우인렬(禹仁烈)로 판삼사사(判三司事)를, 이무(李茂)로 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를, 이서(李舒)로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를, 조영무(趙英茂)로 문하 시랑찬성사(門中侍郎贊成事)를, 조온(趙溫)으로 삼사 좌사(三司左使)를, 정구(鄭矩)로 대사헌(大司憲)을, 박석명(朴錫命)으로 도승지(都承旨)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11장 B면

【영인본】 1책 18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닫기

會學生於順天寺西部於彌勤寺兩寺僧以破染三寶啓之即  
命罷學○左政丞成石璘以疾辭○太上王命重創新菴寺  
○上以延慶宮屬 太上殿中官朴英文啓于 太上殿 太  
上喜賜英文馬一匹○是月日本駿州太守源定使人獻馬二  
匹發還被擄人博多城承天禪寺住持闇公使人獻禮物求藏  
經又慈雲禪院住持天真使人亦獻禮物發回被擄人口○九  
月對馬島沙彌靈鑑使人獻馬六匹○出自北門潛幸本宮監  
督營繕○移御良醞洞安瑗第○己巳月犯建星○成石璘以  
母老乞辭甚切以石璘封昌寧伯李居易判門下府事閔齊左  
政丞河崙右政丞禹仁烈判三司事李茂判三軍府事李舒判  
承寧府事趙英茂門下侍郎贊成事趙溫三司左使鄭矩大司  
憲朴錫命都承旨○憲司劾侍史申商摠制辛克禮子年十一  
歲拜功臣都監錄事受祿憲司以幼未稱職還徵其祿時商錯  
誤文簿故也○召柳雲都興等擊毬于殿庭○放鹿于媒島嘗  
畜鹿于壽昌宮後苑至是放之○門下府上䟽請以甲士歸之

● 인세보기

▼ 국역

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월 25일(을유) 2번째기사  
 조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대사헌 김약채·중승 전순 외의 대관들을  
 폄척하다

조준(趙浚)으로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를, 이서(李舒)로 찬성사(贊成事)를, 곽추(郭樞)로 예문관 태학사(藝文館太學士)를, 정구(鄭矩)로 예문관 학사(藝文館學士)를, 이지(李至)로 정당 문학(政堂文學)을 삼고, 대사헌(大司憲) 김약채(金若采)·중승(中丞) 전순(全順)은 그대로 본직(本職)을 제수하고, 그 나머지 대관(臺官)들은 모두 외임(外任)으로 내보내었으니, 유두명(柳斗明)은 밀양 부사(密陽府使)를, 이관(李灌)은 지양주사(知襄州事)를, 안종약(安從約)은 황주 판관(黃州判官)을, 허조(許稠)는 완산 판관(完山判官)을 삼았다. 처음에 허조가 사헌 잡단(司憲雜端)이 되어 사진(仕進)을 파(罷)하고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응방인(鷹坊人) 십수 기(十數騎)가 팔뚝에 매(鷹)를 받고 지나갔다. 조가 소유(所由)<sup>24)</sup>를 시켜 그 종(奴)을 잡아서 전옥(典獄)에 가두었다. 응인(鷹人)이 임금께 아뢰니, 명하여 조를 불렀다. 조가 아전 7인을 거느리고 궐문(闕門)에 들어가니, 문을 지키던 갑사(甲士)가 이를 막고 다만 한 사람의 아전만 따라 들어가게 하였다. 임금이 조(稠)에게 물기를,

“응인(鷹人)의 종을 가두고 오래도록 석방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조(稠)가 대답하기를,

“소사(所司)는 항상 왕명을 받들고 다니는데, 이들 우리가 소사(所司)를 능멸(凌蔑)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종을 가둔 것이옵고, 근일에 제좌(齊坐)<sup>25)</sup>가 없고, 신이 마침 병이 있어 사진(仕進)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석방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조(稠)가 또 문자(門者)<sup>26)</sup>의 종(奴)을 가두고 여러 날 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임금이 이를 듣고 순군(巡軍)에 명하여 조의 종(奴) 10명을 가두었다. 중승(中丞) 전순(全順)이 아뢰기를,

“대원(臺員)은 항상 왕명(王命)을 받들기 때문에, 길에서 벽제(辟除)하고 다니는 것은 왕명(王命)을 높이는 까닭입니다. 지금 응인(鷹人)이 말을 타고서 그대로 지나가고, 문자(門者)가 따르는 아전(從吏)을 잡아 물리쳤으니, 어찌 왕명을 높이는 도리입니까? 조가 기강(紀綱)을 떨친 것은 왕명을 높인 것이오니, 조의 종을 석방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응인은 내가 준 패(牌)를 가진 자이고, 문자는 출입의 번잡을 금하는 것이 그 직책이다. 또 내가 중국의 제도를 보건대, 비록 공경(公卿)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궐문(闕門)에 들어가지 못한다. 경(卿)들은 응인과 문자가 소사(所司)를 능멸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경들이 과인(寡人)을 능멸하였다고 생각한다. 또 예전 법에 대성원(臺省員)이 잘못이 있으면 비록 동료(同僚)라 하더라도 문득 탄핵하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더러 그르다고 하니 가한가? 가운 조(稠)의 종(奴)은 한 달이 끝나도 석방하지 않겠다.”

하였다. 전순이 물러가매, 시사(侍史) 유두명(柳斗明)·이관(李灌), 잡단(雜端) 안종약(安從約) 등이 대사헌(大司憲) 김약채(金若采)·중승(中丞) 전순(全順)을 탄핵하여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주상께서 조(稠)를 불러 수죄(數罪)하고 그의 종 10명을 가두시었는데도, 약채는 한번도 간(諫)하여 다루지 않았사오니, 조금도 헌신(憲臣)의 의(義)가 없습니다. 삭탈 관직(削奪官職)하여 외방(外方)에 귀양보내어 뒷사람을 권려(勸勵)하소서. 전순(全順)은 항언(抗言)하여 홀로 아뢰다가 유윤(俞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집으로 돌아가서 사진(仕進)하지 않는 것이 가한데, 의연히 행공(行公)하는 것은 헌사(憲司)의 직책에 어긋납니다. 파직(罷職)하여 서용(敍用)치 마소서. 잡단(雜端) 허조(許稠)는 많은 근수(根隨)를 거느리어 정(定)한 제도에 어긋남이 있어 문자에게 모욕을 당하였는데도, 의연히 출사(出仕)하오니, 아울러 파직하소서. 헌관(憲官)은 의관(衣冠)·구사(丘史)가 일반 관원과 다르고, 길 가는 사람이 피하는 것은 그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까닭입니다. 잡단 허조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비(李佐)·문천봉(文天奉) 등 10여 명이 태연히 말에서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犯馬], 조(稠)가 종인(從人)을 잡게 하였는데, 도리어 능욕(凌辱)을 당하였으니, 소사(所司)를 능멸한 것뿐 아니라, 주상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포(狂暴)하기가 너무 심한데도, 전하께서 도리어 헌사의 신하를 책하시오니, 신 등은 두렵건대, 붓을 잡은 선비가 사책(史策)에 곧게 써서 후세에 성덕(聖德)의 누(累)를 끼칠까 합니다. 좌우의 간신들이 모두 그 그런 것을 알면서도 우물쭈물하고 말하지 않았사오니, 모두 임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곧은 말을 너그러이 용납하시고, 특별히 유사(佞司)에게 명하여

이비·문천봉 등의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외방으로 내쫓으시어, 후인(後人)의 광포(狂暴)한 짓을 막으소서.”

소(疏)가 올라오매, 임금의 뜻에 거슬려서 폄출(貶黜)당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장 A면

【영인본】 1책 194면

【분류】 \*신분-천인(賤人)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정론(政論) /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 \*재정-진상(進上)

[註 24]소유(所由) : 사헌부의 이속(吏屬). ㄷ

[註 25]제좌(齊坐) : 대관(臺官)들이 모여 앉아 일을 의논하는 것. ㄷ

[註 26]문자(門者) : 궐문을 파수하는 자. ㄷ



都監 命都監將未畢事計數以聞○丁丑木稼○設水陸齋  
 於觀音窟 上謂侍讀金科曰國行佛事予已罷之宮中婦女  
 異其子延壽用私財或設禮懺或行水陸欲禁而未能耳○庚  
 辰祈穀于圓壇○辛巳賜崔潤馬一匹潤為 聖節使李至書  
 狀官還啓 皇帝待慰甚厚且謂戊辰年振旅之功莫大使禮  
 部主事陸顯鴻臚行人林士英等賫捧 詔書賞賜已過鴨綠  
 江 上喜有是賜○壬午夜四方有赤氣○癸未日珥○甲申  
 日珥日直日包日暈夜東南有赤氣○改各道都觀察黜陟使  
 為按廉使安魯生慶尚道趙休全羅道李垠忠清道李之直江  
 原道鄭渾京畿左道柳珣京畿右道李揚豐海道○乙酉演福  
 寺井水沸 遣左承旨李原祭之○以趙浚為判門下府事李  
 舒贊成事郭樞藝文館大學士鄭矩藝文館學士李至政堂文  
 學大司憲金若采中丞全順仍除本職其餘臺官皆補外柳斗  
 明密陽府使李灌知襄州事安從約黃州判官許稠完山判官  
 初稠為司憲雜端罷仕夜歸有鷹坊人十數騎臂鷹過行稠令

大正大王實錄卷第一

● 인세보기

▼ 국역

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7월 26일(계축) 3번째기사  
공신에게 검교직 부여 금지 등 시무에 관한 사간원의 상소문

사간원에서 상소(上疏)하여 정사를 의논하였다.

“1. 옛날은 관리로서 직책이 있는 사람이라야 상록(常祿)<sup>708</sup>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신(功臣)과 제군(諸君)에게는 이미 전도와 노비[臧獲]를 하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대로 그 하사를 받게 하였으니, 포상(褒賞)의 은전이 이미 극진한데도 또 상록이 있음은 과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직책이 없는 여러 군(君)에게는 상록을 불허(不許)하소서. 또 대소의 검교지신(檢校之臣)도 직책이 없이 녹(祿)을 허비하니, 앞드려 바라건대, 모두 다 정파(停罷)하소서.

1. 재상(宰相)이란 임금과 천위(天位)를 같이 하여 천직(天職)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임금은 반드시 쓸 만한 인재를 고른 뒤에야 임명하였는데, 오늘날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 이숙(李淑)은 어려서 일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니, 종친의 예에 두심이 마땅하고,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신극례(辛克禮)도 재주와 덕행이 맞지 아니하므로 훈신의 예(例)에 두심이 마땅하니, 아울러 재보(宰輔)의 직책은 허락하시지 마소서.

1. 임금의 일신(一身)은 만화(萬化)의 근원이므로, 동정(動靜)과 위의(威儀)를 삼가지 않을 수 없으니, 앞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정사(政事)를 들으실 때나 예도를 갖추어 행행(行幸)하실 때, 중립(中笠)을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모(紗帽)를 사용하시어, 침시(瞻視)를 높게 하소서.

1. 각도의 전지(田地)를 개량(改量)<sup>709</sup>할 때, 차견(差遣)된 사람들의 소견이 같지 아니하여, 결부(結卜)의 수가 어떤 것은 평등하고 어떤 것은 과중하여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니, 앞드려 바라건대, 신간(新墾)의 <전지> 이외의 다시 측량한 전지는 우선 전안(前案)에 의거하여 조세를 거두어서 백성의 마음을 편하게 하소서.

1. 근자에는 천도(遷都)를 한 처음이라 영선(營繕)의 일을 해이하게 할 수 없는 일이나, 전하께서는 외방 백성의 농사에 방해가 됨을 염려하여, 대체로 공작(工作)이 있게 되면, 오로지 부(府)·위(衛)의 군사만 역사시켰습니다. 각처의 영선 역시 거의 끝났으나, 부(府)·위(衛)의 사람들은 공역(公役)에 곤고(困苦)하여 사삿일을 볼 겨를이 없으니, 어찌 원망이 없겠습니까? 원컨대, 토목의 역사를 일절 정파(停罷)하고, 또 각도에서 세공 재목(歲貢材木)도 감하여 민력(民力)을 쉬게 하소서.”

또 대제학 권근(權近),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 전 판한성부사 최유경(崔有慶), 전 도관찰사 유관(柳觀)은 정부(政府)에 둘 만하고, 흥녕군(興寧君) 안경공(安景恭), 전 판한성부사 이행(李行), 계림군(雞林君) 이내(李來)는 제조(諸曹)의 우두머리가 될 만하며, 전 판중추원사 정홍(鄭洪), 계림 부윤(雞林府尹) 함부림(咸傅霖), **중군 총제 정구(鄭矩)**, 계림군(雞林君) 이승상(李升尙)은 **감사(監司)가 될 만하다고 천거하니**, 임금이 상소[疏]를 보고, 대내에 두고 내려 보내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5장 B면

【영인본】 1책 365면

【분류】 \*의생활(衣生活) / \*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 / \*인사-임면(任免) / \*왕실-행행(行幸) / \*정론(政論)

[註 708]상록(常祿) : 평소에 받는 녹(祿). ⇨

[註 709]개량(改量) : 다시 측량함. ⇨

▶ 달기

旌其門優給豆米○吏曹請改外方官號啓曰按本朝外方設  
官之制雞林府寧海府稱號同而官品不同蔚州興海郡皆為  
知官官品同而稱號不同若監務之號則不見於傳記非古制  
也乞雞林永興平壤完山四府外大都護府則改稱牧都護府  
及小府改稱知州在前知州改稱知郡監務改稱縣令上然  
之○癸丑暴風揚塵○震仁義縣人高元吉○司諫院上疏論  
事一古者有官守者有常祿今功臣諸君既賜土田臧獲俾之  
世受其賜褒賞之典已盡而又有常祿則過矣願自今無職事  
諸君不許常祿且大小檢校之臣無官守費天祿伏望悉皆停  
罷一宰相人君所與共天位治天職者也故古之人君必擇人  
而後任之今議政府贊成事李淑少不更事宜置宗親之例參  
贊議政府事辛克禮才德不稱宜置勲臣之例並不許宰輔之  
職一人主一身萬化之源動靜威儀不可不慎伏望 殿下於  
每日聽政與備禮行幸之際勿御中笠須御紗帽以尊瞻視一  
各道田地改量之際差遣之人所見不同其結卜之數或平或

重民庶怨咨伏望新墾外改量之田姑依前案收租以便民心  
 一近因遷都之始營繕之事不可或弛而 殿下慮外民之妨  
 農凡有工作專役府衛之兵各處營繕亦幾乎訖矣府衛者困  
 於公役無暇營私豈無怨咨願土木之役一皆停罷且減各道  
 歲貢材木以休民力又薦大提學權近安城君李叔蕃前判漢  
 城府事崔有慶前都觀察使柳觀可置政府興寧君安景恭前  
 判漢城府事李行雞林君李來可長諸曹前判中樞院事鄭洪  
 雞林府尹咸傳霖中軍摠制鄭矩雞林君李升商可為監司  
 上覽䟽留中不下○甲寅暴風揚塵○遣王川君劉敞行雩祀  
 圓壇祭又分遣人設道場於檜巖興德寺又命各道都觀察使  
 徧祈于封內山川○下六曹司憲府陳言于議政府擬議可行  
 以聞○丙辰太白晝見自己酉至是日凡八日暴風揚塵不變  
 人色移時乃止○命斷織扇禁屠殺滌溝渠徙市○命左政丞  
 河崙禱雨于昭格殿 上以久旱晝不御正殿夜不安內寢欲  
 親行圓壇祭訪於崙對曰親雩不可輕舉也今 宗廟山川禱

● 인색보기

▼ 국역

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4월 13일(정유) 1번째기사  
조박과 정구에게 의정부의 참찬·참지 직을 제수하다

조박(趙璞)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정구(鄭矩)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상았다.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17장 B면

【영인본】 1책 39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달기

咨極矣今以可已之事而後之不已甚可恤也予欲止之但以  
 政府之所為故未能果斷知申事黃喜對曰僧徒不務農業遊  
 手四方今給其食以營繕政府之議似未失也 上曰若軍資  
 庫則不可無也今尚未畢而又一時驟興無名之役糜費貲糧  
 可乎哉羣臣莫敢對○丁酉以趙璞為參贊議政府事鄭矩參  
 知議政府事○戊戌清州雨雹傷麻麥○己亥置酒廣延樓柳  
 觀成石因安魯生盧閑入侍觀等三人自京師回閑則將朝京  
 故特慰之○辛丑欽差官陳敬李賓至昌德宮先行 聖節賀  
 禮 上冕服率羣臣行賀禮仍宴敬等於廣延樓○壬寅親試  
 文臣於廣延樓下以左政丞河崙大提學權近為讀卷官吏曹  
 參議益思誠知申事黃喜為對讀官中外時散文臣從三品以  
 下赴試者百有八人設帳幕場紙硯酒菓及朝夕食試論表各  
 一道為初場論題曰闢四門表題曰賀平安南間一日開終場  
 試時務策題曰王若曰古昔帝王立法定制必因時宜以隆至  
 治唐虞三代致治之道可得聞歟精一執中堯舜禹相授心法

● 인세보기

▼ 국역

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13일(을미) 1번째기사  
하윤·조영무를 좌·우 정승에 유임시키다. 기타의 인사이동

다시 하윤(河崙)으로 좌정승(左政丞)을, 조영무(趙英茂)로 우정승(右政丞)을, 권근(權近)으로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를, 유양(柳亮)·김희선(金希善)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유관(柳觀)으로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정구(鄭矩)로 공조 판서(工曹判書)를, 이승(李膺)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박자청(朴子靑)으로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를, 안노생(安魯生)으로 이조 참의(吏曹參議)를 삼았다. 이에 대간(臺諫)이 다시 하윤·민제(閔霽)·민우구(閔無咎)·민우질(閔無疾)·이현(李玄)·공부(孔俯)·안노생(安魯生)을 논핵(論劾)하여 장차 소장(疏章)을 올려 죄를 청하려고 하니, 임금이 이를 알고서 대사헌(大司憲) 성석인(成石因)·좌사간(左司諫) 최항(崔咸)을 불러 이르기를,

“대간(臺諫)의 직책에 있어 진실로 옳다. 외척(外戚)과 대신(大臣)을 탄핵(彈劾)하여 기강(紀綱)을 떨치고자 하는 것은 과인(寡人)이 즐겁게 듣는다. 그러나, 이강(釐降)<sup>993</sup>에 대한 모책(謀策)은 본래 우리 나라를 이롭게 하고자 한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느냐? 또 조정(朝廷)의 사신(使臣)이 장차 올 것이다. 정승(政丞)의 직임(職任)은 국사(國事)를 총통(摠統)하는 것이니 가볍게 진퇴(進退)시킬 수 없고, 또 적합한 사람이 그리 쉽지 않다. 어찌 하루라도 그 자리를 비울 수 있겠느냐?”

하니, 성석인이 대답하기를,

“하윤(河崙) 등이 마음속으로 전하(殿下)께서 세자(世子)가 이미 혼인하였고 황엄(黃儼)에게 고한 것을 알면서도, 구설(口舌)로써 이를 고치려고 하였습니다. 황엄은 성질이 본래 정(精)하게 살피므로, 만일 이 말을 듣는다면 반드시 그 일을 알 것이니, 천자(天子)께 아뢰기를, ‘아무 나라[某國] 인군(人君)은 반복(反復)하여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사직(社稷)의 안위(安危)가 어찌 이에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신 등은 직책이 나라의 법[邦憲]을 맡았으니 오직 법의 준행(遵行)만 알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의 말이 비록 옳으나, 나도 또한 깊이 생각하였다. 오늘 마땅히 정승을 고쳐 임명하겠다. 대간(臺諫)은 다시 탄핵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광연루(廣延樓)에 거동하여 인(印)을 열어 다시 하윤(河崙)을 좌정승(左政丞)으로 삼고,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를 보내어 관교(官敎)를 싸 가지고 그의 집에 가서 주게 하고, 정사(政事)를 보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4장 B면  
【영인본】 1책 39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

[註 993]이강(釐降) : 황제의 딸이 제후(諸侯)에게 하가(下嫁)하는 것.



放趙璞于楊州巡禁司具璞等獄辭以上 上曰謀計雖謬若  
 原其情但為國事耳非懷譎詐也皆釋之獨璞初有隱諱 上  
 不直璞放于楊州田庄○乙未復以河崙為左政丞趙英茂右  
 政丞權近議政府贊成事柳亮金希善參贊議政府事柳觀刑  
 曹判書鄭矩工曹判書李膺參知議政府事朴子青左軍都摠  
 制安魯生吏曹參議於是臺諫復劾河崙閔霽無咎無疾李玄  
 孔俯安魯生將連章請罪 上知之即召大司憲成石因左司  
 諫崔咸謂之曰臺諫之職固是矣彈劾外戚與大臣欲振紀綱  
 寡人樂聞之然登降之謀本欲利吾國耳豈有他哉且 朝廷  
 使臣將至政丞之任摠統國事不可輕為進退又難其人豈可  
 一日虛其位也石因對曰崙等心知 殿下以世子已婚告于  
 黃儼矣乃欲以口舌改之儼性本精察若聞此言則必知其事  
 奏于 天子曰某國之君反復不信則 社稷安危豈不繫焉  
 臣等職掌邦憲但知執之而已 上曰卿言雖是予亦慮之熟  
 矣今日又當改下政丞矣臺諫毋得更有彈劾遂御廣延樓開

● **인쇄보기**

▼ 국역

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21일(계묘) 3번째기사  
이지·정구·유용생 등을 형조·호조·이조 판서에 임명하다

이지(李至)로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정구(鄭矩)로 호조 판서(戶曹判書)를, 유용생(柳龍生)으로  
공조 판서(工曹判書)를, 유관(柳觀)으로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를, 정훈(鄭渾)으로 좌사간 대부(左  
司諫大夫)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6장 B면

【영인본】 1책 39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닫기

之也汝等未其實耳咸等對曰吏曹參議最為清要之秩臣  
 等以為超遷也 上曰不然咸等遂退○癸卯太白晝見經天  
 ○行蜥蜴祈雨于宮中 上聞巡禁司大護軍金謙言前守甫  
 州見東坡詩有瓮中蜥蜴真堪笑之句注備載祈雨之法謙依  
 其法試之果得雨是日召謙問之即命試之於廣延樓下其法  
 置盛水二瓮於庭捕蜥蜴納之瓮中設席焚香令童男二十人  
 衣青衣持柳枝祝曰蜥蜴蜥蜴興雲吐霧降雨滂沱汝歸去  
 既二日不得雨放童子各賜米一石○以李至為刑曹判書鄭  
 矩戶曹判書柳龍生工曹判書柳觀判恭安府事鄭渾左司諫  
 大夫○遣司譯院判官林密如遼東咨曰謹見世子進賀正朝  
 擬於九月初頭起程欲要經由陸路前去煩為轉達 朝廷許  
 令北京往來○甲辰欽差千戶金聲還自義州○議政府贊成  
 事權近等上書論事書曰人主與大臣元首股肱有同一體可  
 否相濟共成其治者也舜命禹曰予違汝弼高宗命傅說爾交  
 修予傳曰和臣不忠忠臣不和故君所曰可宰相有所不可歷

● 인세보기

▼ 국역

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2월 4일(계미) 2번째기사  
다시 좌·우정승이 이조와 병조를 겸관하게 하다

다시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으로 겸 판이조사(判吏曹事)를, 우정승(右政丞) **이무(李茂)**로 겸 판병조사(判兵曹事)를, **이문화(李文和)**로 호조 판서(戶曹判書)를, **정구(鄭矩)**로 예조 판서(禮曹判書)를, **김한로(金漢老)**로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를 삼았다. 예전 제도에 좌·우정승(左右政丞)이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겸해 말[兼判]아서 전선(銓選)을 관장(管掌)하였는데,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가 지이조(知吏曹)로서 중간에서 용사(用事)한 지가 오래 되어, 비록 두 정승(政丞)이 천거한 자라도 쓰지 않는 것이 많고, 자기와 친신(親信)한 사람을 임금께 여러 번 칭찬하여 벼슬에 임명하게 하니, 재상(宰相)이 매우 꺼려 하였으나 어찌할 수 없으므로, 매양 전선(銓選)할 때를 당하면 사양하고 회피하여 물러갔다. 이에 좌·우상(左右相)이 모두 겸령(兼領)하는 것을 사면(辭免)하니, **황희**의 공정(公正)치 못한 일을 갖추어 익명서(匿名書)를 만들어서 두세 번 게시(揭示)한 일이 있었다. **황희**가 조금 누우치고 깨달아, 이때에 이르러 계문(啓聞)해서 예전 제도를 회복하게 하였으나, 역시 재상의 의논을 쓰지 않고 봉당(朋黨)을 가까이 하니, 사람들이 모두 지목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5장 A면

【영인본】 1책 42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답기

丞解兼判吏兵曹予至今悔之欲使復判吏兵曹掌銓選卿等  
 毋避一時一己之嫌對之以實左右相分判政曹非古法乎成  
 石璘對曰臣老耄且困於簿書 殿下春秋鼎盛學問精明為  
 政用人臣無間然苟有其失則薦進人物宰相之職何必兼判  
 政曹然後得以匡救其失乎河崙對曰臣昔者累曾面陳 殿  
 下必應記得趙英茂對曰此非臣等之事臣不敢言○二月庚  
 辰朔 上詣德壽宮問疾自後日以為常或一日再詣焉○一  
 岐守護代源舉使人獻禮物○壬午賜賻惠和宮主李氏之喪  
 宮主高麗侍中齊賢之女恭愍王無子選入後宮封惠妃後為  
 尼時住淨業院賻米豆三十石紙百卷以昭悼君妻沈氏代為  
 淨業院住持○倭船九隻連日寇巖秦島鹽千金羅進葛金等  
 擊走之羅進等二十餘人血戰斬三級獲被擄人二名賊乃退  
 ○癸未遣司譯院副使李子瑛管押易換四運馬四百三十四  
 如遼東○復以左政丞成石璘兼判吏曹事右政丞李茂兼判  
 兵曹事李文和戶曹判書鄭矩禮曹判書金漢老判恭安府事

大正六年三月...

五

● 인세보기

▼ 국역

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2월 11일(경인) 1번째기사  
세째 아들을 충녕군으로 봉하고, 하윤과 성석린을 세자의 사·부로 삼다

세째 아들 【금상(今上)의 휘(諱).】 을 봉(封)하여 충녕군(忠寧君)을 삼고,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으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세자사(世子師)를,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으로 세자부(世子傅)를, 한산 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로 영삼군사(領三軍事)를, 이직(李稷)으로 이조 판서(吏曹判書) 겸 판의용순금사사(判義勇巡禁司事)를, 남재(南在)로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 겸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이귀령(李龜齡)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이지(李至)로 예조 판서(禮曹判書)를, 이문화(李文和)로 호조 판서(戶曹判書)를, 설미수(俠眉壽)로 공조 판서(工曹判書)를, 이내(李來)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정구(鄭矩)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함부림(咸傅霖)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7장 A면

【영인본】 1책 43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닫기

敬差官推刷漫散軍之未現者也陳敬率來力士各一人隨之  
 ○庚寅封第三子諱今上為忠寧君以晉山府院君河崙領議政  
 府事世子師左政丞成石璘世子傅漢山府院君趙英茂領三  
 軍事李稷吏曹判書兼判義勇巡禁司事南在議政府贊成事  
 兼司憲府大司憲李龜齡參贊議政府事李至禮曹判書李文  
 和戶曹判書僕眉壽工曹判書李來知議政府事鄭矩判漢城  
 府事咸傳霖參知議政府事○太上王避病于都摠制金南秀  
 之第○壬辰遣知司譯院事康邦祐管押五運馬三百一十四  
 如遼東○癸巳命還給曹渾李恪職牒○太上王避病于世子  
 宮 太上在避病所 上日以晨夕再詣問疾是夜三更 上  
 親奉 太上避病于世子殿殿在昌德宮側又鑿北墻為門自  
 是 上竟日侍疾親奉藥餌至病勢危殆則通宵侍側移世子  
 宮于義安大君和之第○乙未以吏曹判書李稷知貢舉兵曹  
 判書柳亮同知貢舉○忠寧君娶右副代言沈溫之女○丙申  
 封閔氏為下韓國大夫人鄭氏為淑懿翁主沈氏為敬淑翁主

● 인세보기

▼ 국역

태종 23권, 12년(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3월 22일(병오) 2번째기사  
변계량을 세자 우빈객으로 삼고 윤향과 정구에게도 관직을 제수하다

변계량(卞季良)을 세자 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으로, 윤향(尹尙)을 한성 윤(漢城尹)으로, 정구(鄭矩)를 계림 부윤(鷄林府尹)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19장 B면

【영인본】 1책 62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닫기

備辦○甲辰前大司憲金瞻獻山水及水墨龍簇子各一雙○  
 東北面採訪別監朴允忠鍊進金一斤二兩役軍八百凡三十  
 餘日○日本江州太守板倉滿家使人獻禮物求洪鍾兼告禁  
 賊之意○乙巳觀放鷹于東郊沿漢江而西至迎曙驛由截義  
 門而還○丙午 上王幸北郊觀放鷹 上命中官賫酒菓迎  
 慰○以下季良為世子右副賓客尹向漢城尹鄭矩雞林府尹  
 ○左政丞成石璘進請臺諫不可以廢 上曰卿等若不更請  
 朴蔓等罪則予將命還就職矣命知議政府事朴信曰臺諫人  
 主之耳目不可一日無也然復使就職則必如前日之請如何  
 卿徃與本府議聞○吏曹判書李稷以病辭 不允○罷大護  
 軍趙珠護軍崔普老職珠等俱以內禁衛入直珠夢見前大護  
 軍林尚陽寤言於普老普老曰汝亦如尚陽停職珠怒執普老  
 頭髮以朱杖歐之且罵言祖父痕咎普老亦以匣劍扶珠刑曹  
 請收告身科罪○下護軍成載前知雲州事鄭子壽于巡禁司  
 獄初載告刑曹云甲申年間從姊夫鄭子壽為軍資注簿以奴

● 인쇄보기

▼ 국역

태종 28권, 14년(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7월 20일(신묘) 2번째기사  
정구를 개성 유후사 유후로, 이은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다

정구(鄭矩)를 개성 유후사 유후(開城留後司留後)로 삼고, 이은(李垕)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7장 A면
- 【영인본】 2책 2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닫기

成均司成朴賁等率諸生詣闕上箋以謝○庚寅賜前司憲監  
 察權蹈等二十五人及第以蹈為司諫院右獻納賜蹈及李隨  
 高得宗宮醞各四十瓶隨兩大君之傳也得宗耽羅人故有是  
 賜○辛卯太白晝見經天○以鄭矩為開城留後司留後李垠  
 司憲府大司憲○壬辰命構都城左右行廊 上曰自鍾樓至  
 南大門自 宗廟前樓門至東大門左右欲建行廊予既歛怨  
 於民寧畢造以燕翼子宜以忠清江原兩道年例斫取材木營  
 之朴信韓尚敬鄭擢黃喜等曰年例材木恐未周足宜於忠清  
 江原水邊各郡量宜分定信又請復置別窰以備蓋瓦 上皆  
 許之命朴子青督其役發兩界各道僧軍六百名京畿豐海道  
 船軍一千名以赴其役○甲午大雨停 千秋賀禮 上曰為  
 臣而擅停賀禮可乎代言等對曰霑服失容則雖 天子不應  
 受朝矣初 上憂旱減午膳是日復之○宥外方付處臺諫官  
 李作李有喜卜倜李文幹李孟吟尹會宗柳澁金履祥李審韓  
 卷皆京外從便 上曰近日儒生對策皆言臺諫之言雖或不

● 인세보기

▼ 국역

태종 32권, 16년(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11월 2일(기축) 1번째기사  
유정현을 영의정으로 박은·한상경을 좌·우의정으로 임명하다

유정현(柳廷顯)을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박은(朴堧)을 좌의정(左議政)으로, 한상경(韓尙敬)을 우의정(右議政)으로, 남재(南在)를 의령 부원군(宜寧府院君)으로, 한규(韓珪)를 면성 부원군(沔城府院君)으로, 김한로(金漢老)를 의정부 찬성(議政府贊成)으로, 정구(鄭矩)를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으로, 박신(朴信)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황희(黃喜)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심온(沈溫)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25장 A면

【영인본】 2책 13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달기

참고자료 14

肖為甚誅之誰曰不可然今流遠方不能自死而生理孔艱其  
 苦可惜欲令遠方從便若何工曹參判李安愚對曰致庸姦惡  
 無比死有餘辜幸得延命今又賜之從便臣以謂不可若許遐  
 方自願付處或者為可 從之司諫院上疏曰向者致庸罪在不  
 忠 殿下以好生之德特垂寬典俾全首領只流遐方臣庶之  
 心猶有歎焉今又下自願付處之命是則邦憲益寬而為惡者  
 無所懲矣伏望 殿下明正其罪以戒後來 ○命臺諫刑曹與  
 義禁府鞫問王上尤逃隱之處與容隱之人以聞前金海府使  
 李穗上言家奴王上尤實前朝王氏娶臣家婢所生也在逃久  
 矣今幸捕之願加鞫問故有是命 ○己丑以柳廷顯為領議政府  
 事朴崑左議政韓尚敬右議政南在宜寧府院君韓珪河城府  
 院君金漢老議政府贊成鄭矩議政府參贊朴信吏曹判書黃  
 喜工曹判書沈溫判漢城府事 ○庚寅 上詣仁德宮 上  
 王請之也擊毬置酒宗親侍宴至夜乃罷 ○辛卯咸興府民進  
 松骨鷹賜襦衣 ○壬辰放王上尤及其弟和尚上尤和尚及其

太宗二十三年

三十二

● 인쇄보기

▼ 국역

태종 33권,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1월 19일(병오) 1번째기사  
성절사로 의정부 참찬 정구를 경사에 보내다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정구(鄭矩)를 보내어 경사(京師)<sup>4058</sup>로 떠나게 하니, 성절(聖節)을 하  
례함이었다. 명하여 홍무 연간(洪武年間)<sup>4059</sup>에 건강(健康)에서 만든 각궁(角弓)을 사오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4장 A면

【영인본】 2책 144면

【분류】 \*외교-명(明)

[註 4058]경사(京師): 명나라 서울. ☞

[註 4059]홍무 연간(洪武年間): 1368~1398. ☞

▶ 닫기

下遣韓方至于平原審視講武之所源欲庇妻鄉通書居信請  
 沮講武之所居信甘受比附之書兩稽留啓聞且其書內有同  
 封片簡不并以聞豈人臣盡忠奉上之心乎其片簡所載之事  
 尤為可疑而今本院督納之際托其遺失匿而不出其用心實  
 為難測伏望命下攸司鞫問其由明正其罪又上疏曰臣等將  
 康有信趙源之罪具疏以聞未蒙俞允不勝隕越之至臣等竊  
 謂人臣之罪莫大於不忠不敬此而不懲無以戒後有信之罪  
 臣等雖未悉知所犯必不外乎不忠不敬也源欲以妻鄉不為  
 講武之所敢行比附之私皆當痛懲者也 殿下特從輕典只  
 令貶黜于外其於懲惡戒後之意何如伏望 殿下依前疏  
 俞允施行並皆 不允○丙午遣議政府叅贊鄭矩如京師賀  
 聖節也命買洪武年間建康所造角弓以來○量移趙璠于  
 高陽縣以母殯所在也○司諫院上治道數條一人材國家之  
 器用不可以不預養也今所謂修文集賢實文等閣徒有其名  
 而無其實乞於國中創立集賢殿擇館閣提學中可主文者數

大正三十三

● 인세보기

▼ 국역

태종 33권,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6월 16일(경자) 1번째기사  
판서와 대언 등을 새로 임명하다

김한로(金漢老)를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심온(沈溫)을 이조 판서로, 맹사성(孟思誠)을 호조 판서로, 김여지(金汝知)를 공조 판서로, 정구(鄭矩)를 의정부 찬성(議政府贊成)으로, 연사종(延嗣宗)·성발도(成發道)를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으로, 윤사영(尹思永)을 좌대언(左代言)으로, 김효손(金孝孫)을 좌부대언(左副代言)으로, 원숙(元肅)을 우부대언(右副代言)으로, 최부(崔府)를 동부대언(同副代言)으로, 이하(李賀)를 사헌 장령(司憲掌令)으로 삼았다. 윤사영은 안동(安東)에서, 김효손은 원평(原平)에서, 원숙은 양근(楊根)에서, 최부는 광주(光州)에서 부름을 받았다. 임금이 말하였다.

“대언(代言)의 직임은 출납(出納)을 관장하고, 가까이 좌우(左右)에 있는 신하이니, 다른 관직에 비할 것이 아니다. 금후로는 외방에 있으면서 제수받은 자는 마땅히 역마[駟]를 타고 서울로 부임하게 하라.”

이 앞서 외관(外官)으로 경직(京職)을 제수받은 자는 모두 말을 주어 서울로 부임하게 하였는데, 근자에 역로(驛路)가 조폐(凋弊)하여 모조리 금지한 까닭으로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64장 B면

【영인본】 2책 17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교통-육운(陸運)

▶ 닫기

有定米十石○命左議政朴訔就職司憲掌令鄭欽之劾請曰  
 朝啓廳大臣論道之處朴訔以首相不言國家大務屢陳私事  
 殊失大臣之體是以訔在家不仕至是命出仕欽之未幾罷○  
 庚子以金漢老為兵曹判書沈溫吏曹判書孟思誠戶曹判書  
 金汝知工曹判書鄭矩議政府贊成延嗣宗成發道議政府參  
 贊尹思永左代言余孝孫左副代言元肅右副代言崔府同副  
 代言李賀司憲掌令思永自安東孝孫自原平肅自楊根府自光  
 州被召 上曰代言職掌出納近在左右之臣非他官比也今  
 後在外除授者宜令乘駟赴京前此以外官除京職者皆給馬  
 赴京近以驛路凋弊並禁故有是命○李賀朴訔進士同年也  
 賀常使妻備酒肉進退於訔家○命釋徐選洪汝方李明德韓  
 承顏又釋李陟楊秩鄭宗誠金安卿等且命朴信鄭易尹向等  
 罪照律以聞是日柳廷顯等質信選等鞫問之狀以進 上問按  
 問畢乎河演對曰信等唯曰誤錯入傳不言元情下季良謂演  
 曰最是元情今未見推於問事何如 上曰季良識理人也故

● 인세보기

▼ 국역


태종 34권,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8월 8일(신묘) 3번째기사  
의정부 찬성 정구가 사직하다

의정부 찬성(議政府贊成) 정구(鄭矩)가 사직하였으니, 풍병[風疾] 때문이다. 임금이 허락하고, 내약(內藥)<sup>4646</sup>을 주고 전의감(典醫監)에 명하여 치료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9장 B면

【영인본】 2책 18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註 4646]내약(內藥) : 내의원(內醫院)에서 제조한 약(藥). 

▶ 닫기

斬其每 上曰其每於 上王有身生子不忍也提調等請曰  
 其每既得罪見黜 上王何惜哉 上然之將斬竟以 上王  
 之命不果斬○遣前判司譯院事僕耐于善天使行次贈毛衣  
 毛冠及衣一襲其二伴人各賜衣一○議政府贊成鄭矩辭以  
 風疾也 上許之仍賜內藥命典醫監治之○癸巳命戶曹各  
 品科田及寺社田地量宜移給且戒其勿破丁以紊田制○司  
 憲府劾執義權尚溫尚溫為內資尹時方有酒禁速客二三人  
 及上妓等會飲于本寺至是憲司劾之尚溫答曰其上妓非予  
 所喚乃掌令金赭為直館時會飲於監察房因而率來妓也於  
 是掌令金赭及監察等皆避嫌不仕事聞 上命刑曹推核以  
 聞掌令李賀與尚溫有隙欲不與同官主謀而劾之○甲午遣  
 宦者金龍奇于咸吉道都巡問使馳報安邊府南川雨水漲溢  
 漂沒五戶溺死者三十 上命龍奇曰安邊守雖驟雨使人急  
 救之可也且宜川文川之守已熟之穀宜急收穫都巡問使亦  
 宜督令收穫皆不慮焉而失其事機汝往諭此意取安邊宜川

● 인세보기

▼ 국역

태종 35권, 18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5월 7일(병진) 2번째기사  
전 의정부 찬성 정구의 졸기

전 의정부 찬성(議政府贊成) 정구(鄭矩)가 졸(卒)하였다. 정구는 동래(東萊) 사람으로 자(字)는 중상(仲常)이요, 감찰 대부(監察大夫) 정양생(鄭良生)의 아들이었다. 정사년 을과(乙科)에 제2인(第二人)으로 급제하여, 중외(中外)에 두루 벼슬 하였다. 천성이 부지런하고 삼가고 명민(明敏)하여, 이르는 곳마다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또 예서(隸書)·초서(草書)·전서(篆書)를 잘 썼다. 무인년에 임금이 정안군(靖安君)으로 판상서사(判尙瑞司)를 겸임하게 하였는데, 강직하고 공정하며 고려(高麗)에 아부하지 않은 자를 얻어서 요속(遼屬)을 삼고자 생각하여, 이에 정구를 판교서감사(判校書監事) 겸 상서 소윤(尙瑞少尹)으로 삼았다가, 드디어 승지(承旨) 겸 상서 윤(尙瑞尹)을 제수하였다. 도승지(都承旨)로 옮기고, 대사헌(大司憲)으로 승진하였다가, 여러 번 옮겨서 찬성(贊成)에 이르렀다. 정구는 사람됨이 영정(淸靜)<sup>5079</sup> 하고 낙이(樂易)<sup>5080</sup> 하여, 청빈(淸貧)을 스스로 지키고 가사(家事)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 비록 자제(子弟)를 대할 적에라도 반드시 띠(帶)를 묶고서 보았으며, 종일 고요한 모습이었고 일찍이 거칠거나 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졸(卒)할 때 나이가 69세였다. 철조(輟朝)<sup>5081</sup>하기를 3일 동안 하였으며, 중관(中官)을 보내어 사제(賜祭)하고 정절(靖節)이라 시호하였다. 아들이 둘이니 정선경(鄭善卿)·정효동(鄭孝童)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46장 A면

【영인본】 2책 221면

【분류】 \*인물(人物)

[註 5079]영정(淸靜): 편안하고 고요함. ☞

[註 5080]낙이(樂易): 마음이 즐겁고 편안함. ☞

[註 5081]철조(輟朝): 조회를 정지하는 것. ☞

▶닫기

制使○乙卯觀獵于南郊世子及兩大君從之○丙辰議政府  
 六曹請誕日獻壽禮 不允○前議政府贊成鄭矩卒矩東萊  
 人字仲常監察大夫良生之子中丁巳乙科第二入歷仕中外  
 勤謹明敏所至有聲績又善隸草篆書戊寅 上以靖安君兼  
 判尚瑞司思得剛正不附麗者為僚屬乃以矩為判校書監事  
 兼尚瑞少尹遂拜承旨兼尚瑞尹遷都承旨陞大司憲累轉至  
 贊成矩為人恬靜樂易清貧自守不以家事嬰心雖待子弟必  
 束帶見之終日恬然未嘗見其暴怒年年六十九輟朝三日遣  
 中官賜祭謚靖節二子善卿孝童○江原道都觀察使洪汝方  
 辭職汝方以母病辭以南琴代之○丁巳夜大雨○戊午減內  
 侍府檢校三四品各一加七品至九品各二自檢校通政知內  
 侍府事至朝奉同僉內侍府事每品各除一乃以內侍府正七  
 品至於九品每品各加二焉○以趙秩為左軍都摠制河敬復左  
 軍同知摠制柳濕平安道都節制使○命敬承府尹成抑設佛  
 事于大慈菴仍賜祭誠寧之墓傳旨承政院曰昭頃公平日嗜

● **인쇄보기**

▼ 국역

**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윤4월 13일(을묘) 6번째기사**  
**건원릉에 비석을 세우다. 비문은 권근의 찬**

건원릉(健元陵)에 비를 세웠다. 비문(碑文)은 이러하였다.

“하늘이 유덕(有德)한 이를 돌보아 치운(治運)을 열어 주실 적에는 반드시 먼저 이적(異蹟)을 나타내어 그 부명(符命)을 받게 하니, 하(夏)나라에서는 **현규(玄圭)**<sup>1481</sup>를 내려 준 일이 있었고, 주(周)나라에서는 **협복(協卜)**<sup>1482</sup>의 꿈이 있었다. 한(漢)나라 이후로 대대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두 천수(天授)에서 나온 것이요, 인모(人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 공덕(功德)이 이미 높았으며, 부명(符命)도 또한 나타났었다. 꿈에 어떤 신인(神人)이 금척(金尺)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주면서 말하기를, ‘공(公)은 마땅히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잡으리라.’ 하였으니, 하(夏)나라의 **현규(玄圭)**와 주(周)나라의 꿈과 동부(同符)하다고 하겠다. 또 어떤 이인(異人)이 때문에 와서 글을 바치며 이르기를, ‘지리산(智異山) 암석(巖石) 가운데서 얻은 것이다.’ 하였는데, 거기에는, ‘**목자(木子)**<sup>1483</sup>가 다시 삼한(三韓)을 바로잡으리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을 시켜 나가서 맞이하게 하였더니, 이미 가버리고 없었다. 서운관(書雲觀)의 옛 장서(藏書)인 비기(秘記)에 《**구변진단지도(九變震檀之圖)**》란 것이 있는데, ‘**건목득자(建木得子)**<sup>1484</sup>’라는 말이 있다. 조선(朝鮮)이 곧 진단(震檀)이라고 한 설(說)은 수천년 전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에 와서야 증험되었으니, 하늘이 유덕(有德)한 이를 돌보아 돕는다는 것은 진실로 징험이 있는 것이다.

신(臣)이 삼가 《**선원록(璿源錄)**》을 살펴보니, **이씨(李氏)**는 전주(全州)의 **망성(望姓)**<sup>1485</sup>이었다. 사공(司空) 휘(諱) **이한(李翰)**은 신라에 벼슬하여 종성(宗姓)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6세손(世孫) **이공휴(李兢休)**에 이르러 처음으로 고려에 벼슬하였다. 13세손 황고조(黃高祖) 목왕(穆王)에 이르러 원조(元朝)에 들어가 벼슬하여 천부장(千夫長)이 된 뒤, 4세를 습작(襲爵)하였는데, 모두 아름다운 업적을 이루었다. 원(元)나라의 정치가 쇠퇴하여지자, 황고(皇考) 환왕(桓王)은 돌아와서 **고려의 공민왕(恭愍王)**을 섬겼다.

**지정(至正)** 신축년에 홍건적(紅巾賊)이 고려의 서울[王京]을 함락하니, **공민왕**은 남쪽으로 피난하고, 군사를 보내어 싸워 이겨 수복(收復)하였는데, 우리 **태조**께서 맨 먼저 첩서(捷書)를 올렸다. 이듬해 임인년에 **호인(胡人) 나하추(納哈出)**를 쳐서 패주(敗走)시켰고, 또 이듬해 계묘년에 위왕(僞王) **탑첨목(塔帖木)**을 물리쳐 쫓았다. **공민왕**의 신임이 더욱 두터워, 여러 번 벼슬이 올라 장상(將相)에 이르러 중외(中外)에 출입하였으나, 경사(經史)를 읽기를 좋아하여 부지런히 읽고 게으르지 않았으니, 세상을 구제하는 도량(度量)과 호생지덕(好生之德)은 지성(至誠)에서 나온 것이었다. **공민왕**이 흥(薨)하자 **이성(異姓)**<sup>1486</sup>이 왕위에 오르니, 권간(權奸)이 나라를 마음대로 하여 조정의 정치를 어지럽게 하고, 해적(海賊)이 나라 안 깊숙이 들어와 군현(郡縣)을 불지르고 약탈하였다.

**홍무(洪武)** 경신년에 우리 **태조**께서 **운봉(雲峰)**에서 싸워 이겨, 동남 지방이 편안하여졌다. 무진년에 시중(侍中) **최영(崔瑩)**이 권간(權奸)들을 주륙(誅戮)할 적에 지나치게 참혹하게 하였는데, 우리 **태조**의 힘을 입어 살아난 자가 자못 많았다. **최영**이 **태조**를 시중으로 삼고, 이어서 우군 도통사(左軍都統使)의 절권(節鉞)을 주어 억지로 **요동(遼東)**을 치게 하였다. 군사가 **위화도(威化島)**에 머물렀을 때, 앞장서서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정의(正義)에 의한 깃발을 돌이켰다. 군사가 강 언덕에 오르자 큰물이 섬을 휩쓸어 버리니,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최영**을 잡아서 물리치고, 대신 명유(名儒) **이색(李穡)**을 좌시중(左侍中)으로 삼았다. 바로 이때 권간(權奸)들이 정치를 어지럽게 하고, 광패(狂悖)한 자들이 중국과 혼극(罅隙)을 만들어, 위망(危亡)이 눈앞에 닥치고 화란(禍亂)이 헤아리기 어려웠었는데, 우리 **태조**의 돌이킨 힘이 아니었더라면 나라가 위태하였을 것이다. **이색(李穡)**이 말하기를, ‘지금 공의 의거(義舉)는 중국을 높인 것인데, 집정 대신(執政大臣)이 친히 입조(入朝)하지 않으면 불가(不可)합니다.’ 하고, 날을 받아 명나라 서울로 가려 하매, **태조**가 여러 아들 중에서 지금의 우리 **주상 전하(主上殿下)**<sup>1487</sup>를 골라 **이색**과 함께 조현(朝見)하게 하였더니, 고황제(高皇帝)가 가상(嘉賞)히 여겨 돌려보냈다.

기사년 가을에 황제가 **이성(異姓)**<sup>1488</sup>이 왕이 된 것을 문책하였으므로, **태조**께서 여러 장상(將相)과 더불어 **왕씨(王氏)**의 종친(宗親) **정창군(定昌君) 요(瑤)**를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고, 마음을 다하여 정사를 보필하였다. 사전(私田)을 개혁하고 용관(冗官)을 도태시키니, 여러 사람의 마음이 모두 기뻐하였다. 공(功)이 높아지자 시기(猜忌)를 받아, 참소(讒訴)와 간계(奸計)가 번갈아드니, **정창**

군(定昌君)이 자못 의혹하였다. 태조(太祖)는 지위가 성만(盛滿)<sup>1489</sup> 하다고 하여 노퇴(老退)하기를 청하였으나, 사퇴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그때 마침 서쪽 지방에 행차하였다가 병을 얻어 돌아왔는데, 이 틈을 타서 모해(謀害)하는 자들이 일을 더욱 급박하게 만들었다. 우리 전하(殿下)가 시기에 응해 변(變)을 제압하여, 모든 모해(謀害)가 와해되었다.

홍무(洪武) 임신년 가을 7월 16일에, 전하가 대신(大臣) 배극렴(裴克廉)·조준(趙浚) 등 52명과 더불어 창의(倡義)하여 왕으로 추대(推戴)하니, 신료(臣僚)들과 부모(父老)들이 모의하지 아니 하고도 모두 뜻을 같이하였다. 태조(太祖)가 정변(政變)을 듣고 놀라 일어나서 두세 번 굳이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왕위에 올랐다. 집의 섬들을 내려오지 아니하고 한 집안을 나라로 화(化)하게 하였으니, 하늘이 유덕(有德)한 이를 계도(啓導)하여 돕지 아니 하고서야 누가 능히 이같이 할 수 있겠는가! 즉시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조반(趙胖)을 중국에 보내어 주문(奏聞)하니, 황제가 조(詔)하기를, ‘삼한(三韓)의 백성들이 이미 이씨(李氏)를 높였고, 백성들은 병화(兵禍)가 없이 사람마다 각각 하늘이 주는 즐거움을 즐기고 있으니, 이는 상제(上帝)의 명(命)이다.’ 하였다. 또 칙명(勅命)하기를, ‘나라 이름은 무엇으로 고쳐 호칭하려 하는가?’ 하였으므로, 즉시 예문 학사(藝文學士) 한상질(韓尙質)을 보내어 주청(奏請)하니, 또 조(詔)하기를, ‘조선(朝鮮)이란 명칭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근본으로 하여 지었으면 좋겠다. 하늘을 모받아 백성을 기르고, 길이 후사(後嗣)를 창성하게 하라.’ 하였다. 우리 태조(太祖)의 위엄(威嚴)과 명성(名聲)과 의열(義烈)이 천자(天子)에게까지 높이 들려서 황제(皇帝)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고명(誥命)을 청하자 문득 유음(兪音)을 받게 된 것이니,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3년을 지난 갑술년 여름에 나라를 모함하는 자가 있어, 황제가 친아들을 보내어 입조(入朝)시키라고 명하였다. 태조(太祖)께서 우리 전하가 경서(經書)에 능통하고 사리(事理)에 통달하여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하여, 즉시 보내어 명(命)에 응하게 하였다. 명나라에 이르러 부주(敷奏)한 것이 황제의 뜻에 맞으니, 우대하여 돌려보냈다. 그해 겨울 11월에 한양(漢陽)에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짓고 종묘(宗廟)를 세웠으며, 일찍이 4대(四代)를 추존(追尊)하여 황고조(皇高祖)를 목왕(穆王)으로, 배위(配位) 이씨(李氏)를 효비(孝妃)로, 황증조(皇曾祖)를 익왕(翼王)으로, 배위(崔氏)를 정비(貞妃)로, 황조(皇祖)를 도왕(度王)으로, 배위(朴氏)를 경비(敬妃)로, 황고(皇考)를 환왕(桓王)으로, 배위(崔氏)를 의비(懿妃)로 하였다. 예악(禮樂)을 닦고 제사하는 일을 삼가며, 장복(章服)<sup>1490</sup>을 정하여 관등(官等)의 위(威儀)를 구분하고, 학교를 일으켜 인재를 육성하며, 봉록(俸祿)을 후하게 하여 선비를 권장하고, 소송(訴訟)을 바르게 판결하며, 수령(守令)을 신중히 뽑았다. 피폐한 정치를 모두 개혁하고, 여러가지 업적이 빛나니, 해구(海寇)가 와서 복종하고, 온 나라 안이 평안하여졌다. 우리 태조(太祖)의 높고 넓은 성덕(盛德)은 참으로 이른바 하늘이 주신 지용(智勇)·총명(聰明)·신무(神武)·웅위(雄偉)의 임금이라고 하겠다.

간신(奸臣) 정도전(鄭道傳)이 표문(表文)의 글 때문에 중국 조정의 견책(譴責)을 받게 되자, 명(命)을 거역하려고 음모하여, 무인년 가을 8월에 우리 태조(太祖)가 편찮은 틈을 타서 어린 열자(孽子)<sup>1491</sup>를 끼고 자기의 뜻을 펴 보려고 하였는데, 우리 전하가 기미(幾微)를 밝게 살펴 이들을 섬멸하여 없애고, 적장(嫡長)이라 하여 상왕(上王)<sup>1492</sup>을 세자(世子)로 세우도록 청하였다. 9월 정축일에 태조가 병이 낫지 않은 까닭으로 상왕에게 선위(禪位)하였다. 상왕은 계사(繼嗣)가 없고, 또 나라를 세우고 사직(社稷)을 안정시킨 것이 모두 우리 전하의 공적이라고 하여, 곧 세자로 책립(冊立)하였다. 경진년 가을 7월 기사일에 태조(太祖)에게 계운신무태상왕(啓運神武太上王)의 호(號)를 올렸다.

11월 계유일에 상왕도 또한 병 때문에 우리 전하에게 선위하였다. 사신을 중국에 보내어 고명(誥命)을 청하니, 영락(永樂) 원년 여름 4월에 황제가 도지휘사(都指揮使) 고득(高得) 등을 보내어, 조(詔)와 인(印)을 받들고 와서 우리 전하를 국왕(國王)으로 봉(封)하고, 이어서 한림 대조(翰林待詔) 왕연령(王延齡) 등을 보내어 와서 전하에게 곤면 구장(袞冕九章)을 하사하였으니, 품계(品階)가 친왕(親王)과 동일하였다. 우리 전하가 양궁(兩宮)<sup>1493</sup>을 봉양(奉養)하는데 정성과 공경을 극진히 하였다. 영락(永樂) 무자년 5월 24일 임신일에 태조(太祖)께서 승하하니, 춘추가 74세이고, 재위(在位)가 7년이며, 늙어서 정사를 보지 않으신 지 11년이다. 감자기 활과 칼만 남기시니,<sup>1494</sup> 아아, 슬프도다! 우리 전하께서 애모(哀慕)함이 망극(罔極)하여 거상(居喪) 중에 예(禮)를 다하였다. 책보(冊寶)를 받들어 태조 지인 계운 성문 신무 대왕(太祖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의 호(號)를 올리고, 이해 9월 초9일 갑인일에 성동(城東) 양주(楊州)의 경내 겸양산(儉巖山)에 장사하고, 능(陵)을 건원릉(健元陵)이라 하였다. 부음(訃音)을 듣고 황제가 놀라고 슬퍼하여 파조(罷朝)<sup>1495</sup>하고, 곧 예부 낭중(禮部郎中) 임관(林觀) 등을 보내어 태위(太宰)<sup>1496</sup>의 예로 사제(賜祭)하였는데, 그 글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왕은 총명하고 사리에 통달하며 선(善)을 좋아하였으니, 천성에서 나온 것이며, 천도(天道)를 공경하여 순종하고, 의(義)를 들어 충성을 다하여 공순히 사대(事大)하기를 힘쓰며, 한 지방의 백성을 보호하고 긍휼(矜恤)히 하니, 우리 황고(皇考)께서 그 충성을 매우 아름답게 여겨 다시 나라 이름을 조선(朝鮮)이라고 내렸다. 왕의 뛰어난 공덕(功德)은 비록 옛날 조선의 어진 임금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나올 수 없으리라.’ 하고, 또 고명(誥命)을 내려 시호(諡號)를 ‘강헌(康獻)’이라 하였다. 또 전하에게 자유(勅諭)하고 부의(賻儀)를 특별히 후하게 내렸다. 남달리 사랑하는 은전(恩典)을 극진히 하여 유

감(有感)됨이 없었으니 대개 우리 태조(太祖)의 하늘을 두려워하는 정성과 전하의 그 뜻을 이어 받드는 효성이 전후(前後)에 서로 이어서, 천심(天心)을 잘 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종(始終)의 즈음에 있어 하늘과 사람이 위 아래에서 돕는 것이 이처럼 지극함을 얻은 것이니, 아아, 기록하도다!

수비(首妃) 한씨(韓氏)는 안변(安邊)의 세가(世家)로서 증 영문하부사(贈領門下府事) 안천 부원군(安川府院君) 휘(諱) 한경(韓卿)의 딸인데, 먼저 흥(薨)하였다. 처음에 시호(諡號)를 절비(節妃)라고 하였다가, 뒤에 승인 순성 신의 왕후(承仁順聖神懿王后)의 호(號)를 더하였다. 6남 2녀를 낳았는데, 상왕(上王)이 둘째이고 전하가 다섯째이다. 맏이는 이방우(李芳雨) 진안군(鎭安君)인데 먼저 졸(卒)했고, 세째는 방의(芳毅) 익안 대군(益安大君)인데 역시 먼저 졸(卒)하였다. 그 다음 네째는 이방간(李芳幹) 회안 대군(懷安大君)이고, 여섯째는 이방연(李芳衍)인데 과거에 올랐다가 곧 죽으니 원윤(元尹)을 증직(贈職)하였다. 장녀(長女)는 경신 궁주(慶愼宮主)인데 상당군(上黨君) 이저(李佇)에게 시집갔다. 같은 이씨가 아니다. 다음은 경선 궁주(慶善宮主)인데 청원군(靑原君) 심중(沈淙)에게 시집갔다. 차비(次妃) 강씨(康氏)는 판삼사사(判三司事) 강윤성(康允成)의 딸인데, 처음에 현비(顯妃)를 봉하였으나 먼저 흥(薨)하자, 시호(諡號)를 신덕 왕후(神德王后)라고 하였다. 2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長男)은 이방번(李芳蕃)이니 공순군(恭順君)을 증직하였고, 다음은 이방석(李芳碩)이니 소도군(昭悼君)을 증직하였다. 딸은 경순 궁주(慶順宮主)이니 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에게 시집갔는데, 역시 같은 이씨는 아니다. 모두 먼저 졸(卒)하였다. 상왕(上王)의 비(妃)는 김씨이니, 지금 왕대비(王大妃)를 봉하였으며, 증 문하 시중(門下侍中) 김천서(金天瑞)의 딸로서 자식이 없다.

우리 중궁(中宮)은 정비(靜妃) 민씨(閔氏)인데,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시(諱) 문도공(文度公) 민제(閔濟)의 딸이다. 4남 4녀를 낳았는데, 장남은 세자(世子) 이제(李禔)이고, 다음은 이보(李補) 효령 대군(孝寧大君), 다음은 이도(李道)<sup>1497</sup> 충녕 대군(忠寧大君)이며, 다음은 어리다. 장녀는 정순 궁주(貞順宮主)이니 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에게 시집갔는데, 역시 같은 이씨는 아니다. 다음은 경정 궁주(慶貞宮主)이니 평양군(平壤君) 조대림(趙大臨)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경안 궁주(慶安宮主)이, 길천군(吉川君) 권규(權珪)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어리다. 진안군(鎭安君)은 찬성사(贊成事) 지연(池淵)의 딸에게 장가들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은 복근(福根) 봉녕군(奉寧君), 다음은 덕근(德根) 원윤(元尹)이다. 익안 대군(益安大君)은 증 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 최인두(崔仁斗)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으니, 석근(石根) 익평군(益平君)이다. 회안 대군(懷安大君)은 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 민선(閔瑄)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으니, 맹중(孟衆) 의령군(義寧君)이다.

신이 역대(歷代)의 천명(天命)을 받은 임금을 보건대, 덕업(德業)의 성태함과 부명(符命)의 신기함이 간책(簡冊)에 밝게 나타나서 그 빛이 끝없이 흐르는데, 우리 조선이 일어난에 거룩한 덕과 신령한 부명(符命)이 옛날보다 빛남이 있다. 이는 마땅히 이미 그 위(位)를 얻고 또 수(壽)를 얻었으니, 넓은 기업(基業)을 더 높이고 큰 복조(福祚)를 이어받아 천지와 더불어 장구하리다. 신 권근(權近)이 외람되게 비(碑)에 새길 글을 지으라는 명을 받았으니, 어찌 감히 정성을 다하여 성덕(盛德)을 드러내서 밝은 빛을 후세에 드리우지 않으리오! 그러나 신은 글재주가 비졸(鄙拙)하여 성(盛)하고 아름다운 덕(德)을 드러내서 밝은 뜻을 남김없이 칭송하기에는 부족하와, 삼가 공훈(功勳)과 덕업(德業)이 사람들의 귀와 눈에 남아 있는 것만을 찬술(撰述)하고, 감히 손으로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명(銘)을 드리노라. 그 글[詞]은 이러하다.

‘하늘이 이 백성 낳으시고 사목(司牧)<sup>1498</sup>을 세워, 기르고 다스리실 제 유덕(有德)한 이 돌보시네. 하늘이 순순(諄諄)히 말하지 않건마는 명(命)은赫赫(赫赫)하게 나타나 있나니, 우(禹)임금은 현규(玄圭)를 내려 주고, 주(周)나라의 꿈은 협복(協卜)일세. 우리 조선 처음 왕업(王業)을 여실 제, 신인(神人)이 꿈에 나타나 금척(金尺)을 주었으니, 부록(符籙)이 먼저 정해지고, 천명(天命)이 아주 분명하였네, 고려 운수 이미 다하매, 임금은 어둡고 재상은 흑독하여, 농사철에 군사 일으켜 중국(中國)과 혼극(罅隙)을 일으켰네, 우리 군사 의(義)의 깃발 돌이키니, 죄인(罪人)들 복죄(伏罪)하여 벌받았네. 충성이 위에 들려 황제 마음 기뻐하였네. 천운(天運)이 돌아오고 여정(輿情)이 절박(切迫)하여, 대업(大業)은 이미 이룩되었건만, 저자[市肆]는 바뀌지 아니하였네. 고향제(高皇帝) 조(詔)하기를, 「그대 나라를 세웠으며, 백성들 병화(兵禍) 없고 하늘이 준 기쁨 즐기네.」 하였고, 이어서 국호를 조선(朝鮮)이라 회복하여 주었네. 땅을 골라 도읍(都邑)을 정하니 한강의 북쪽이라. 범이 웅크린 듯 용이 도사린 듯, 왕기(王氣)가 쌓인 바다. 궁실(宮室)은 높디 높고 종묘(宗廟)는 의젓하네. 임금 어진 마음 깊어 살리기를 좋아하고, 정사는 아름답고 생각은 화순하여, 온갖 제도 갖춰지고 모든 교화(教化) 흠족하네. 정사에 지치시어 적사(嫡嗣)에게 선위(禪位)하니, 공 있는 이에 양보하였네. 밝고 밝은 우리 전하 기미(幾微)를 밝게 살펴, 화란(禍亂)을 두 번이나 평정하니, 그 경사 지극히 돈독하네. 나라를 세우고 사직을 안정시킨 것 모두 우리 전하의 공적이니, 대명(大命)을 사양하기 어려워 신기(神器)<sup>1499</sup>를 부락받았네. 양궁(兩宮)을 공경히 받드니, 경건하고 공순함이 더욱 지극하도다. 효제(孝弟)가 신(神)에 통하여, 상제(上帝)의 돌보심이 더욱 우약(優渥)하네. 태조의 상(喪)을 만나 근심에 잠겨, 애모(哀慕)의 슬픈 정 몸부림치네. 황제가 듣고 놀라고 슬퍼하여, 사신을 보내어 조곡(弔哭)하고 태뢰(太牢)로 제사하며, 칙명(勅命)하여 후부(厚賻)하고 아름다운 시호(諡號)를 주어 포장(褒裝)하니, 흠전(恤典)은 온전히 갖추어졌네. 하늘의 도우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 큰 복이 길이 이어지고, 자손이 번창하여, 종사(宗祀)가 유구(悠久)하여 하늘처럼 무궁하리라.”

이 글은 길창군(吉昌君) 권근(權近)이 지은 것이다. 정승(政丞) 성석린(成石璘)이 쓰고, 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정구(鄭矩)가 전액(篆額)을 쓰니, 성석린에게는 안마(鞍馬)를, 정구에게는 말 1필을 하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27장 B면

【영인본】 1책 483면

【분류】 \*역사-사학(史學) / \*어문학-문학(文學)

[註 1481]현규(玄圭): 현(玄)은 검은 빛이요, 규(圭)는 큰 홀(笏)이다. 예전에 요(堯)임금이 우(禹)임금에게 이 현규(玄圭)를 하사하였었는데, 이것은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을 물려준다는 뜻임.

[註 1482]협복(協卜): 문왕(文王)이 사냥을 나갈 때 꿈을 꾸는 것을 점치고, 그의 대업(大業)을 도운 강태공(姜太公)을 얻었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

[註 1483]목자(木子): 이씨(李氏).

[註 1484]건목득자(建木得子): 이씨(李氏)를 이르는 말임.

[註 1485]망성(望姓): 이름 높은 양반 성씨.

[註 1486]이성(異姓): 신씨(辛氏). 곧 우왕(禡王).

[註 1487]주상 전하(主上殿下): 태종(太宗) 이방원(李芳遠).

[註 1488]이성(異姓): 신씨(辛氏). 창왕(昌王).

[註 1489]성만(盛滿): 차고 넘침. 곧 정승의 자리를 말함.

[註 1490]장복(章服): 관복(官服)의 제도.

[註 1491]얼자(孽子): 이방석(李芳碩).

[註 1492]상왕(上王): 공정왕(恭靖王) 즉 정종(定宗).

[註 1493]양궁(兩宮): 태상왕(太上王)과 상왕(上王).

[註 1494]갑자기 활과 칼만 남기시니, : 옛날 중국의 황제(皇帝)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 활[弓]을 떨어뜨렸고, 또 황제(皇帝)를 장사지냈다는 교산(橋山)이 무너졌을 때 그 관중(棺中)에는 다만 칼[劍]만 남아 있었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 곧 귀인(貴人)의 죽음을 일컫는 말임.

[註 1495]파조(罷朝): 철조(輟朝).

[註 1496]태뢰(太牢): 나라 제사에 소를 통째로 올리는 일. 처음에는 소·양·돼지를 아울러 올렸으나, 뒤에 소만 올리게 되었음.

[註 1497]이도(李禱): 금상(今上)의 휘(諱).

[註 1498]사목(司牧): 임금.

[註 1499]신기(神器): 임금자리.

▶ 달기

人○乙卯原州隕霜○震闕寧縣松樹火二日乃滅雨雹如彈  
 丸大○震陽山縣及減陰縣耕夫○以下季良為藝文館提學  
 同知春秋館事○罷內贍少尹趙須職須之家與前水軍僉節  
 制使金紹家隣夜投石於須家者數至破器物須疑紹家奴  
 金連所為跡而執之縛箠之紹妻薛氏率奴婢夜抵須家毀門  
 扉遂入罵須須方寢驚起裸身走避之連伴死須以熨斗熨其  
 臍藥吹鼻孔連起走刑曹以須告兩請其罪命罷須職勿論薛  
 氏○立 健元陵碑文曰天眷有德以開治運必先現異彰其符  
 命夏有玄圭之錫周有協卜之夢由漢以降代各有之皆由天  
 授非出人謀惟我 太祖大王之在龍淵也勲德既隆符命亦  
 著夢有紳人執金尺自天降而授之曰公宜持此正國夏圭周  
 夢可同符矣又有異人來門獻書云得之智異山巖石之中有  
 木子更正三韓之語使人出迎則已去矣書雲觀舊藏秘記有  
 九變震檀之圖建木得子朝鮮即震檀之說出自數千載之前  
 由今乃驗天之眷佑有德信有徵哉臣謹按璿源李氏全州望

姓司空諱翰仕新羅娶宗姓之女六世而至兢休始仕高麗十  
 三世而至皇高祖穆王入仕元朝而長千夫四世襲爵咸能濟  
 美元政既衰皇考桓王還仕高麗恭愍王至正辛丑紅寇陷王  
 京恭愍南遷遣使克復我 太祖先登獻捷明年壬寅擊走胡  
 人納哈出又明年癸卯却逐偽王塔帖木恭愍恃倚益重累官  
 至將相出入中外樂觀經史亶亶無倦濟時之量好生之德出  
 於至誠恭愍薨異姓竊位權奸擅國濁亂朝政海寇深入焚掠  
 郡縣洪武庚申我 太祖戰捷雲峯東南以安戊辰侍中崔瑩  
 誅戮權奸過於慘酷賴我 太祖全活頗多瑩以 太祖為侍  
 中仍授右軍都統高鉞逼遣攻遼師次威化島倡率諸將仗義  
 旋旆師既登岸大水沒島人皆神之執退瑩代以名儒李穡為  
 左侍中方是時也權奸濁亂狂悖構隙危亡岌岌禍亂莫測非  
 我 太祖轉移之力一國殆矣穡曰今公舉義以尊中國然非  
 執政親朝則不可剋日如京 太祖為擇諸子以今我 主上  
 殿下與穡偕朝 高皇帝嘉賞而遣己巳秋 帝責異姓為王

太宗大王實錄卷第百一十二  
 二一八

太祖與諸將相選立王氏宗親定昌君瑤盡心輔政革私田  
 汰冗官羣情胥悅功高見忌讒慝交構定昌頗感焉 太祖以  
 盛滿請老而不得謝會因西行遘疾而還謀者益急我 殿下  
 應機制變羣謀瓦解洪武壬申秋七月十六日 殿下與大臣  
 裴克廉趙浚等五十二人倡義推戴臣僚父老不謀僉同 太  
 祖聞變驚起牢讓再三勉登 王位不下堂陞而化邦國祚天  
 啓佑有德疇克如茲即遣知中樞院事趙胖奏聞 帝詔曰三  
 韓之民既尊李氏民無兵禍入各樂天之樂乃 帝命也繼又  
 有勅國更何號即遣藝文學士韓尚質奏請又詔曰維朝鮮之  
 稱義可以本其名而祖之體天牧民永昌後嗣繇我 太祖威  
 聲義烈升聞于上簡在帝心故當請 命輒蒙 俞音豈偶然  
 哉越三年甲戌夏有構國家者 帝命遣親男入朝 太祖以  
 我 殿下通經達理賢於諸子即遣應命既至敷奏稱旨優禮  
 賜還其冬十一月定都于漢陽營宮室建 宗廟嘗已追尊四  
 代皇高祖為穆王配李氏為孝妃皇曾祖為翼王配崔氏為貞

妃皇祖為度王配朴氏為敬妃皇考為桓王配崔氏為懿妃修  
 禮樂而愍祀事定章服而辨等威興學以育材重祿以勸士辨  
 析詞訟慎簡守令弊政悉革庶績惟熙海寇來服四境按堵我  
 太祖巍蕩盛德真所謂天錫智勇聰明神武雄偉之主也奸  
 臣鄭道傳以表辭獲譴 帝庭陰謀拒命戊寅秋八月乘我  
 太祖不豫之隙欲挾幼孽以肆已志我 殿下炳發殲除以嫡  
 以長請建 上王為世子九月丁丑 太祖以疾未瘳禪于  
 上王上王未有繼嗣且謂開國定社咸我 殿下之績乃冊為  
 世子庚辰秋七月己巳獻 太祖以啓運神武太上王之號冬  
 十有一月癸酉 上王亦以疾禪位于我 殿下遣使請命永  
 樂元年夏四月 帝遣都指揮使高得等奉詔印來封我 殿  
 下為國王繼遣翰林待詔王延齡等來賜 殿下袞冕九章秩  
 視親王我 殿下奉養兩宮誠敬備至永樂戊子五月二十四  
 日壬申 太祖晏駕春秋七十四歲在王位七年老不聽政十  
 有一年弓劍忽遺嗚呼痛哉我 殿下哀慕罔極諱闇盡禮奉

卷之六十三 太宗本紀第七

三十一

冊寶上太祖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之謚以是年九月初九日甲寅葬于城東楊州治之儉巖山陵曰健元及訃聞 皇帝震悼罷朝即遣禮部郎中林觀等賜祭以大牢其文略曰惟王明達好善出於天性敬順天道效義摠忠恭謹事大保恤一方之民我 皇考深嘉忠誠賜復國號曰朝鮮王功德之著雖古朝鮮之賢王無以過也又賜誥命謚曰康獻又勅 殿下賜賻特厚寵異之典備極無憾蓋我 太祖畏天之誠 殿下繼志之孝前後相承克享天心故於始終之際大獲天人上下之助如此其至嗚呼盛哉首妃韓氏安邊世家贈領門下府事安川府院君諱卿之女先薨初謚節妃後加謚承仁順聖神懿王后誕六男二女 上王居二我 殿下居五長曰芳兩鎮安君先卒次三芳毅益安大君亦先卒次四芳幹懷安大君次六芳衍登科不祿贈元尹女長慶慎宮主下嫁上黨君李佇祿一李也次慶善宮主下嫁青原君沈淙次妃康氏判三司事久成之女初封顯妃先薨謚神德王后誕二男一女男長芳蕃贈恭順君次

芳碩贈昭悼君女慶順宮主下嫁興安君李濟亦非一李也皆  
 先卒 上王妃金氏今封王大妃贈門下侍中天瑞之女無嗣  
 我 中宮靜妃閔氏驪興府院君謚文度公諱霽之女誕四男  
 四女長男世子禔次祐孝寧大君次諱<sup>今上</sup>忠寧大君次幼女長貞  
 順宮主下嫁清平君李伯剛亦非一李次慶貞宮主下嫁平壤  
 君趙大臨次慶安宮主下嫁吉川君權陞次幼鎮安娶贊成事  
 池齋之女生二男長曰福根奉寧君次曰德根元尹益安娶贈  
 門下贊成事崔仁斗之女生男曰石根益平君懷安娶門下贊  
 成事閔璿之女生男曰益衆義寧君臣觀歷代受命之君德業  
 之盛符命之神輝映簡冊流光罔極今我朝鮮之誕興也盛德  
 貞符于古有光是宜既得其位又得其壽峙洪基流景祚與天  
 地而久長矣臣近濫承勒碑之命敢不竭精鋪張盛德以垂耿  
 光然臣筆力鄙拙不足以發揚盛美稱塞 明旨謹撰敷德之  
 在人耳目者敢拜手稽首而獻銘其詞曰天生斯民立以司牧  
 迺長迺治迺眷有德祚天諄諄有命赫赫禹錫玄圭周夢協卜

惟我朝鮮肇基王迹愛有神人授以金尺符籙前定天命昭晰  
 嚴運既終君昏相酷農月興師大邦構隙我師義旋罪人斯得  
 忠誠上聞帝心載懌曆數有歸輿情斯迫大業既成市肆不  
 易高皇曰咨惟爾有國民無兵禍樂天之樂繼賜國號朝鮮  
 是復相地定都于漢之北虎踞龍盤王氣攸積宮室崇崇宗  
 廟翼翼仁深好生治蔚思輯百度俱修萬化斯洽乃倦于勤傳  
 付聖嫡乃讓于功惟世惟及明明我后有幾必燭禍亂再平其  
 慶克篤開國定社咸我之績大命難辭神器有托祗奉兩宮虔  
 恭愈恪孝弟通神帝眷尤渥遭喪惇惇哀慕踴擗帝聞震  
 悼遣使吊哭大宰有祀厚賻有勅美謚褒嘉恤典備飭自天佑  
 之終始不忒景祚繇繇子孫千億宗祀攸長與天罔極吉昌君  
 權近所製也政丞成石璘書前判漢城府事鄭矩篆額賜石璘  
 鞍馬矩馬一匹○丁巳上親行文昭殿望祭○戊午分遣  
 敬差官于慶尚江原忠清全羅道問民疾苦也上聞各道守  
 令不輟營繕多作樓臺以事觀遊妨農病民故有是命是春





NAVER 지식백과

한시 작가 · 작품 사전

# 송산유거

송산에서 조용히 살다

[ 松山幽居 ]

저자	정구
구분	조선 태종 때 문신
출생 - 사망	1350년 ~ 1418년
본관	東萊(동래)
이명	자 : 仲常(중상) 호 : 雪壑齋(설학재) 시호 : 靖節(정절)

蓬華門前一老松 百年春雨養髯龍 暮天霜雪埋窮壑 看取亭亭特殊容。  
 (봉필문전일노송 백년춘우양영룡 모천상설매궁학 간취정정특수용)  
 오두막집 문앞에 선 오랜 소나무, 백년 세월 겪어 구레나룻 난 용같이 꿈틀거리네.  
 지난 밤 서리와 눈에 온 골짜기가 덮였는데,  
 홀로 우뚝 선 모양 뛰어난 대장부 모습이라.

### 어구(語句)

松山 : ① 개성에 있는 산. ② 평안북도 義州(의주)의 옛 이름. ③ 전라북도 茂長(무장)의 옛 이름.  
 幽居 : 한적하고 외딴 곳에 살.  
 蓬華 : 蓬戶(봉호, 썩대로 이은 지붕)와 華門(필문, 사립문). 가난한 사람의 집. '자기 집' 경칭.  
 髯龍 : 구레나룻 난 용. '노송의 모습'을 비유했음.  
 暮天 : 저문 때의 하늘. 저녁 하늘.  
 窮壑 : 깊은 골짜기.  
 亭亭 : 우뚝 높이 솟은 모양.  
 特殊 : 아주 다름. '대장부 같은 모습'으로 쓴 말임.

### 감상(鑑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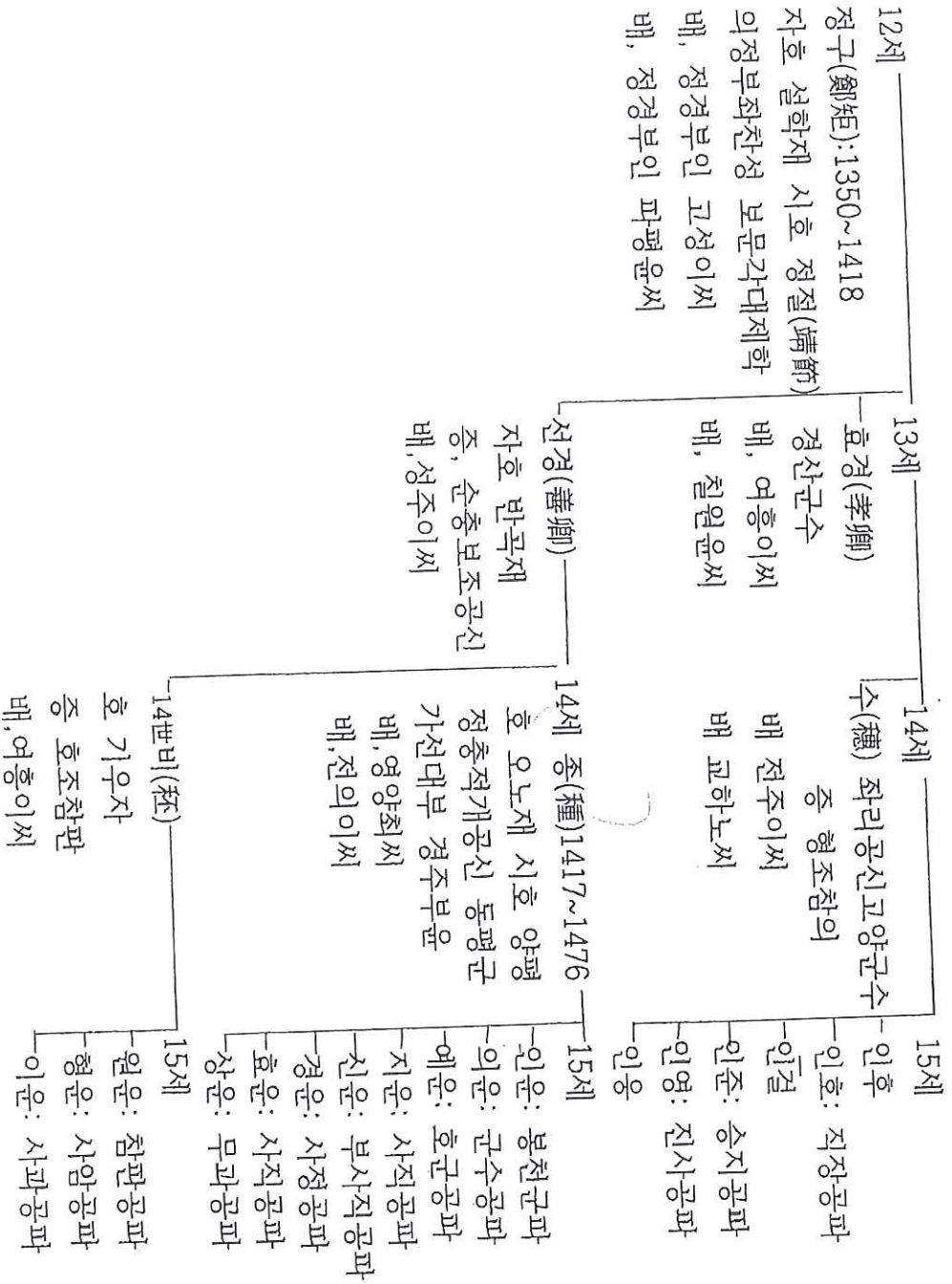
늙어 버슬살이를 은퇴하고 송산에서 한가로이 살며 겨울눈이 온 한 때의 모습을 읊었다. 웅틀임하는 노송이 문앞에 서 있어 그 장한 모습 항상 볼 만했는데, 눈이 내린 뒤 온 천지가 눈으로 덮여 높낮이가 없이 한 일 자 일색이건만, 이 소나무는 우뚝 솟아 푸름을 자랑하니 그 모습 대장부의 기상이다. 조선 숙종 때 학자요 예학의 대가인 朴世采(박세채)는 “雪滿窮巷 孤松特立 丈夫之氣像(눈 덮인 시골에 외 소나무 우뚝 섰으니 장부의 기상이라)” 했다.

### 압운(押韻), 평측(平仄)

7언절구. 압운은 松, 龍, 容 자로 평성 '冬(동)' 평운이다. 평측은 차례로 '平仄平仄仄仄平, 仄仄平仄仄仄平, 仄仄平仄仄仄, 仄仄平仄仄仄'으로 이사부동이륙대는 끝 구에서 어긋났고, 반법과 정법은 그런대로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20

# 설학재공파 대종회 계보도



인쇄하기

인쇄

<취:효경 13세>=현령공 모원재, 현령공묘(구.신비)=(경기 화성 매송) | ▲는 【중요순자료】

서원(鄧圭憲) | 조회 39 | 2009/06/18 01:47:08



석학재 정구 밑아들 훈정 (현령공다)

참고자료 22

공의 휘(諱)는 효경(孝卿)이요 현령(縣令)이며 동래정씨 13세이다.  
 조(祖)는 감찰대부 단성보리 찬화공신(監察大夫 端誠輔理 贊化功臣) 삼중대광봉원부원군(三重大匡蓬原府院君) 휘(諱) 양생(良生)이고 부(父)는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시호(諡號) 정경(靖節) 공 호 심학재(審學齋) 휘(諱) 구(矩)이며 아들은 군수(郡守) 휘(諱) 수(穗)이다.  
 공은 경산현령(慶山縣令)을 지냈다.  
 묘하에 공의 제실 모원제(慕遠齋)가 아남하게 세워져 있다.



현령(縣令)공 묘비(墓碑) 구비(舊碑)



현령(縣令)공 묘비(墓碑) 신비(新碑)

인쇄하기 | 취소



인쇄하기

<휘:선경 13세>=(善卿)의 묘비 (구,신비)=(경북 고령 덕곡 반성리) | ▲는 【중요자료】

서원/鄭圭憲 | 조회 57 | 2009/06/18 01:51:14



선경(善卿)의 구묘비



선경(善卿)의 신묘비 경북 고령군 덕곡면 반성리

공의 휘(諱)는 선경(善卿)이요 동래정씨 13세이다.  
 조(祖)는 감찰대부 단정보리 찬화공신(監察大夫 端誠輔理 贊化功臣) 삼중대광 봉원부원군(三重大匡 蓬原府院君) 휘(諱) 양생(良生)이고 부(父)는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호 설학재(雪峯齋) 시호(諡號) 정절(靖節)공 휘(諱) 구(矩)이며 아들은 첫째 동평군(東平君) 시호(諡號) 양평(襄平) 휘(諱) 종(種) 둘째 기우자(騎牛子)공 휘(諱) 비(秘)이다.  
 내성시판관(內廳寺判官)을 지냈으며 동평군(東平君) 휘(諱) 종(種)의 현귀(顯貴)로 증(贈) 호조판서(戶曹判書) 정헌대부(正憲大夫) 동평군(東平君)에 봉작(封爵) 되었다. 동래정씨 고령 덕곡에 입향조이다.

인쇄하기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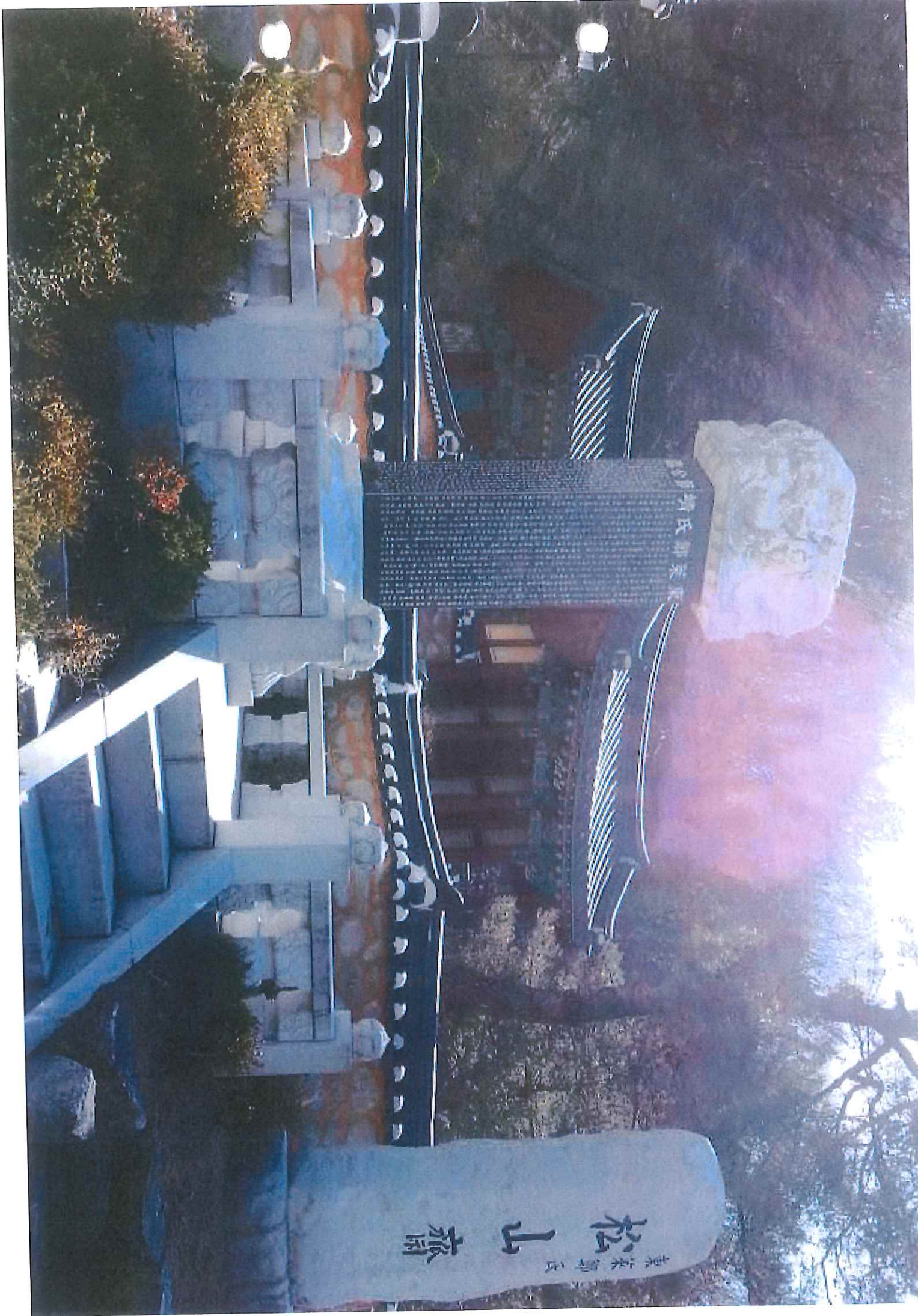
성향재 정주 동래이름 선경 (동평군다)



2009/04/10 11:06







松山齋  
東萊鄭氏

東萊鄭氏墓



# 松山齋

大松文正公御書

明桂文正公御書

先成齋月御書

松古四馬御書



(의정부)송산사(松山祠)-조견(趙狷) 사당- 묘.사.단/廟.祠.壇

2010.04.01. 22:16

<http://roaltf.blog.me/103055605>**(의정부)송산사(松山祠)-조견(趙狷) 사당-**

경기도 기념물 제42호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산 66-1

송산사는 조선의 개국에 참여하지 않고 고려의 신하로 절개를 지키며 은둔하였던 조견(趙狷), 원선(元宣), 이종인(李中仁), 김주(金澍), 김양남(金揚南), 유천(兪天) 등 여섯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제사를 모시던 사당이다. 이 마을은 본래 조견, 정구, 원선 등 세 사람이 먼저 들어온 마을이라 하여 삼귀(三歸)마을이라 했다. 정조 22년(1798) 삼귀서사를 짓고 조견, 원선의 위패만 모셨다. 순조 4년(1804)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불렀고, 순조 11년 나머지 네 사람의 위패를 추가로 모셨다. 고종 때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건물이 전부 헐렸다가, 그 이후 몇 터에 위패만을 모시고 삼귀단(三歸壇)이라 불렀다. 1964년 후손들이 위패석, 제단석, 병풍석 등을 마련하여 여섯 충신들을 모시고 있다. 송산사지는 전형적인 조선후기의 소규모 사당 터이나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특이한 복향으로 배치를 한 유적이다.



[송산사(松山祠) 전경]

참고자료 24

송산사지(松山祠址)

Songsansa Shrine Site

경기도 기념물 제42호

Monument of Gyeonggi-do No. 42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산66-1

Location : San 66-1, Minrak-dong, Uijeongbu-si, Gyeonggi-do

송산사는 조선의 개국에 참여하지 않고 고려의 신하로 절개를 지키며 은둔하였던 조견(趙 顯), 원선(元宣), 이종인(李中仁), 김주(金周), 김양남(金揚南), 유천(兪 天) 등 여섯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던 사당이다. 이 마을은 본래 조견, 정구, 원선 등 세 사람이 먼저 들어온 마을이라 하여 삼귀(三歸)마을이라 했다. 경조 22년(1798) 삼귀서사를 짓고 조견·원선의 위패만 모셨다. 순조 4년(1804)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불렀고, 순조 11년 나머지 네 사람의 위패를 추가로 모셨다. 고종 때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건물이 전부 헐렸다가 그 이후 옛 터에 위패만을 모시고 삼귀단(삼귀단)이라 불렀다. 1964년 후손들이 위패석, 제단석, 병풍석 등을 마련하여 여섯 충신들을 모시고 있다. 송산사지는 전형적인 조선후기의 소규모 사당 터이나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특이한 북향으로 배치를 한 유적이다.

Songsansa is a shrine where the memorial tablets of Jo Gyeon, Won Seon, Yi Jungin, Gim Ju, Gim Yangnam, and Yu Cheon, who remained faithful to Goryeo without joining in the founding of the Joseon Dynasty, are enshrined. In the 22th year of King Jeongjo (1798), Samguiseosa Shrine was constructed and only the memorial tablets of Jo Gyeon and Won Seon were enshrined. In the 11th year of King Sunjo, the memorial tablets of remaining four persons were enshrined. In the reign of King Gojong, the building was torn down by Lord Daewon's order of abolition of all the shrines and Confucian schools. After that, only the memorial tablets were enshrined at the old site which was then called Samguidan. The site of Sangsansa shows a small-scale shrine typical in the late Joseon period except that it faces north.



[송산사]





[송산사 육선생 사적비(松山祠 六先生 事蹟碑)]



☰ 양주 가나다

▶ 정구

[정의]



경기도 양주에 속했던 의정부에 묘소가 있는 여말 선초의 문신.

[가계]

본관은 동래. 자는 중상(仲常), 호는 설학재(雪壑齋). 아버지는 감찰 대부 봉원부 원군(蓬原府院君) 정양생(鄭良生)이다. 어머니는 찬성 안축(安軸)의 딸 순흥 안씨이다. 첫째 부인은 참의 이인지(李之)의 딸 고성 이씨이고, 둘째 부인은 좌윤 윤승경(尹承慶)의 딸 파평 윤씨이다. 아들은 정선경(鄭善卿), 정효경(鄭孝卿)이며, 손자는 정종(鄭種), 정비(鄭?)이다.

[활동 사항]

정구(鄭矩)[1350~1418]는 1377년(우왕 3) 문과에 을과 2등으로 급제하여 전교시 부령(典校寺副令), 좌간의대부를 지냈으며, 1382년(우왕 8) 김극공(金克恭)의 옥사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1392년(태조 1) 조선 개국 후 한성부 우윤에 올랐고, 1394년(태조 3) 왕명으로 왕씨(王氏)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예의 판서 한리(韓理), 봉상경(奉常卿) 조서(曹庶), 헌납(獻納) 권홍(權弘), 사복시 주부 변혼(卞渾) 등과 『법화경(法華經)』 4부를 금물[아교에 개어 만든 금박 가루]로 베껴 썼다.

1397년(태조 6) 좌간의대부, 이듬해 정안군(靖安君)[태종]의 막료로서 판교서 감사(判校書監事) 겸 상서원 소윤(尙瑞院少尹)이 되었고, 승지 겸 상서원 윤을 지냈다. 1400년(정종 2) 승정원 도승지, 대사헌, 1401년(태종 1) 예문관 학사, 중군 총제(中軍總制), 1407년(태종 7)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공조 판서·호조 판서, 이듬해 예조판서, 판한성부사를 지냈다.

1412년(태종 12) 계림부 윤(鷄林府尹), 1414년(태종 14) 개성부의 유후사 유후(留後司留後), 1416년(태종 16) 공조 판서, 의정부 참찬을 역임하였다. 1417년(태종 17) 의정부 참찬으로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가서 홍무(洪武) 연간인 1368~1398에 건강(建康)[난징]에서 제작된 각궁(角弓)을 구입해 가져왔다. 그해 의정부 찬성이 되었으나 풍병으로 사직하고 1418년(태종 18) 세상을 떠났다. 예서·초서·전서를 잘 써 이름이 높았고, 성품은 청렴하였으며 예의가 발랐다.

[학문과 저술]

1409년(태종 9)에 건원릉 신도비(建元陵神道碑)의 전액을 썼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건원릉(健元陵)은 조선을 창건한 태조(이성계(李成桂))의 능이다. 정구의 시인 「송산유거(松山幽居)」 한 편이 전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봉필문전일노송(蓬?門前一老松)[사립문 앞 소나무 한 그루]

백년춘우양염룡(百年春雨養髯龍)[백년 봄비 맞아 용이 되었소]

모천상설매궁학(暮天霜雪埋窮壑)[저문 하늘 눈서리에 산골짜에 묻혔어도]

간취정정특수용(看取亭亭特殊容)[정정한 그 모습 특출하여라]

참고자료 25

[묘소]

정구의 무덤은 경기도 양주 어룡동(魚龍洞)에 있었으나 전란으로 소실되었다. 8세 손 정기(鄭耆)가 꿈을 꾸고 나서 묘를 찾고 재실도 지었다고 한다. 1977년 도시 확장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산단로 68번길 32]으로 산소를 옮겼고, 2002년 새로 재실인 송산재(松山齋)와 송정사(崇靖祠)를 지어 정구를 중심으로 그의 아들 정선경과 정효경을 배향하였다.

[상훈과 추모]

1418년(태종 18) 정절(靖節) 시호를 받았다. 태종은 시호를 내리면서 ‘송산일발(松山一髮)/ 수양동홀(首陽同屹)/ 도덕문장(道德文章)/ 백세사표(百世師表)[아득한 송산은 수양산처럼 우뚝하게 솟아 있구나. 만고의 충절이 어찌 백이 한 사람뿐이겠는가? 맑고 밝은 자연 풍경은 정공의 품은 뜻이요, 그의 도덕심과 문장은 백세도록 스승이니라.]’ 라고 쓴 치제문(致祭文)을 하사하였다. 후에 사림(士林)에서 정구의 절의를 받들어 양주, 안의, 성주, 거창에 사당을 세웠다.

고려 말 양주[지금의 의정부시 민락동 삼귀마을]에 정구를 비롯하여 송산(松山)?조견(趙?)[1351~1425], 원선(元宣) 등 세 사람이 들어와 숨어 살았다고 한다. 그 절개를 기리기 위해 1789(정조 13) 사당을 짓고 삼귀서사(三歸書祠)라 하였다. 이후 1804년(순조 4) 사당 이름을 송산사(松山祠)로 고쳤다.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반성리에 있는 반암서원(盤岩書堂)에서는 정구와 아들 정선경, 손자 정종, 정비를 배향하고 있다. 본래 정구는 백촌(白村)?김문기(金文起)와 함께 1777년(정조 1) 정충사(靖忠祠)에 모셔졌으나 1794년(정조 18) 다른 사람을 추향하게 되어 그해 9월 위패를 옮기고, 이름도 반암서원으로 바꾸었다. 1868년(고종 5)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 철폐령으로 헐렸다가 다시 지어 반암서당(盤岩書堂)이라고 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1994년에 증축한 것으로, 앞쪽에 강당인 반암서당이 있고 뒤쪽에 사당인 세덕사(世德祠)가 있는 전학후묘(前學後墓)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양원마을에 있는 동래 정씨 마을 어귀에는 “정구가 고려 말 이후 이주한 이래 동래 정씨 동성이 모여서 이루어진 서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집성촌”이란 표석이 세워져 있다.



Copyrigh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ll Rights Reserved.

참고자료 26

2014-1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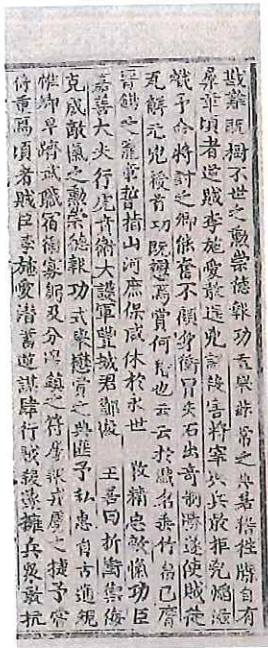


『세조실록世祖實錄』 세조世祖13년11월 2일(甲子)

정충 적개 공신(精忠敵愾功臣) 가정대부(嘉靖大夫) 행충무위상호군(行忠武衛上護軍) 겸 오위장(兼五衛將) 칠산군(漆山君) 정종(鄭種)에게 하교(下敎)하기를,  
 “왕은 이르노라. 충성(忠誠)을 다하여 난(難)을 이기고 이미 불세(不世)이 공훈(功勳)을 세웠으니, 덕(德)을 높이며 공(功)을 갚는데 어찌 비상(非常)한 은전(恩典)을 거행하지 않겠는가? 만약 지나간 문첩(文牒)을 상고하더라도 스스로 몇몇한 전장(典章)이 있었다. 지난번에 역적(逆賊) 이시에(李施愛)가 감히 흉악한 모계(謀計)를 부려서 장수와 수령을 살해하고, 군사를 일으켜 감히 항거(抗拒)하여, 흉악한 기염(氣焰)이 더욱 성하였다. 내가 장수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였는데, 경이 능히 몸을 돌아보지 않고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기계(奇計)를 내어 제승(制勝)하니, 드디어 적도(賊徒)로 하여금 와해(瓦解)되게 하고, 원흉(元兇)의 머리를 바쳤다. 공훈(功勳)이 이미 성하므로, 상을 어찌 늦추겠는가?……아아! 이름이 죽백(竹帛)에 드리워 이미 크게 내려 주는 총애(寵愛)의 법(法)에 응(膺)하였으니, 산하(山河)를 가리켜 맹세하고, 영세(永世)토록 함께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보전하도록 바란다.”하였다

(교정충적개공신가정대부행충무위상호군겸오위장칠산군정종:  
 (敎精忠敵愾功臣嘉靖大夫行忠武衛上護軍兼五衛將漆山君鄭種:  
 왕약왈: 진충감난, 기수불세지훈 숭덕보공, 함거비상지전? 약계왕첩  
 王若曰: 盡忠戡難, 既樹不世之勳 崇德報功, 蓋舉非常之典? 若稽往牒,  
 자유이장. 경자역적리시에, 감령흥모, 살해장제, 흥병감거, 흥염자치.  
 自有彝章. 頃者逆賊李施愛, 敢逞兇謀, 殺害將宰, 興兵敢拒, 兇焰滋熾.  
 여명장토지, 경능분불고신, 충모시석, 출기제승, 수사적도와해, 원흉수수  
 于命將討之, 卿能奮不顧身, 衝冒矢石, 出奇制勝, 遂使賊徒瓦解, 元兇授首.  
 공기무언, 상하계야운운. 어희! 명수죽백, 이응진석지총장 서지산하,  
 功既懋焉, 賞何稽也云云. 於戲! 名垂竹帛, 已膺晉錫之寵章 誓指山河,  
 서보함휴어영세  
 庶保威休於永世.)

참고자료 27



정종 무과급제 교지 (鄭種 武科及第教旨)(1442년)  
 이 무과 급제교지는 1442년(세종 24) 8월 수의교위 행중군 섭사정 정종(修義校尉 行中軍 攝司正 鄭種)이 무과 병과 제5등으로 급제하였음을 증명하는 홍패(紅牌)이다.

교지(教旨)

(修義校尉行中軍攝司正 鄭種武學丙科第五人 及第出身者 正統七年八月日)  
 (수의교위 행중군 섭사정 정종무과 병과 제오인 급제출신자 정통칠년팔월일)

● 사진위에 클릭하면 큰사진으로 볼수 있습니다. (교지)





참고자료 28

